체코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1
2. 정치사회동향 /2
3. 한국과의 주요이슈 /4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4
2. 주요 산업 동향 /7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14

III. 무역

1. 교역동향
수출입 동향 /15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17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수입규제제도 /18
관세제도 /21
주요인증제도 /22
지적재산권 /25
통관운송 / 26
대한수입규제동향 /28

Ⅳ.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투자환경 /29
외국기업 투자동향 /30
우리기업 투자동향 /33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주요 투자법 내용 /35
진출형태별 절차 /41
투자입지여건 / 47

3. 사업관리
노무관리 /51
조세제도 /55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57

Ⅴ.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특성 /58
2. 물가정보 /60
3. 바이어발굴 /62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 62
5. 무역, 투자 진출시 애로사항 /64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65
7. 이주정착 가이드 / 66
8. 출장가이드 /70

1992 MAGELLAN GeographixSMSanta Barbara, CA (800) 929-4627

Ⅰ.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 사항

국 명	체코 공화국(영문: The Czech Republic, 현지어: Ceska Republika)
위 치	북위 48-51도, 동경 12-19도 (독일,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와 접경)
면 적	78,864 ㎢ (한반도의 1/3, 산악: 평지=3:7)
기 후	대륙성 기후. 겨울이 비교적 온화, 여름이 무덥지 않음 (연평균 9-10도)
수 도	프라하 (Praha)
인 구	1,035만 명 (2007년 9월말 기준)
주요 도시	프라하(120만 명), 브르노(37만 명), 오스트라바(34만 명), 올로모츠 (23만 명), 플젠(18만 명) 등
민족(인종)	체코. 모라비아인(94%), 슬로바키아인(2%), 기타(4%)
언 어	공용어: 체코어 / 상용어: 영어, 독어
종 교	가톨릭(39.2%), 개신교(6.2%), 희랍 정교(3.4%), 무교(40%), 기타(11.2%)
건국일(독립일)	1918. 10. 28 (체코슬로바키아 공화국 합스부르크제국에서 독립)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 국가 원수: Vaclav Klaus 대통령 ○ 취임일: 2008.2.15
	○ 총리: Mirek Topolanek (실권자) - 취임일: 2006.11.9 - 2006.6.2-3일 총선에서 시민민주당(ODS)이 승리함에 따라 총리로 취임, - 2007.1.19 하원에서 내각 비준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정부 (2008. 2월 최신자료)

나. 경제 지표

GDP	US$ 1,726억 (경상가격, 2007년)
실질경제성장률	6.6% (2007년)
1인당 GDP	US$ 17,024 (2007년, 추정치)
실업률	6.62% (2007년)
물가상승률	2.8% (2007년)
화폐단위	Czech Crown (CZK, Kc)
환율	US$ 1 = CZK 16.383 (2008.3.5일)
외채	US$ 672억 (2007년 말)
외환보유고	US$ 349억 (2007년 말)
산업구조	제조업(26.7%), 서비스업(62.9%), 건설업(6.4%), 1차 산업(4.0%) (2007년)
교역규모	- US$ 951억(수출), US$ 934억(수입), 무역흑자 US$ 17억 (2006년) - US$ 1,221억(수출), US$ 1,179억(수입), 무역흑자 US$ 42억 (2007년)
교역품	- 수출: 자동차, 기계류, 기초금속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 수입: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원유, 가스

자료원: 체코 통계청, 체코 중앙 은행, EIU(2008. 2월 최신 자료)

다. 한-체코 관계

체결 협정	ㅇ 외교 관계 수립(90.3) ㅇ 무역 및 경제 협력 협정(90.10 서명, 91.4발효) ㅇ 항공 협정 (90.10 서명 및 발효) - 항공 협정 개정(편명 공유 조항 등 신설) 협상 타결(2004.5) ㅇ 이중과세 방지 협정 및 투자 보장 협정 (92.4 서명, 95.3 발효) ㅇ `00 - `02간 문화 교류 시행 계획 의정서 서명 (2000.5) ㅇ 문화 협정(94.10 서명, 발효) ㅇ 사증 면제 협정(94.10 서명, 94.11 발효) ㅇ 과학 기술 협력 협정(95.3 서명, 95.4 발효) ㅇ 원자력 협력 협정 (2001.3 서명) ㅇ 한.체코 사회보장협정 (2007.12.14 서명)
교역규모	ㅇ 2006년 - US$ 5억6천만(우리나라 수출) - US$ 2억6천만(수입): 무역흑자 US$ 3억 ㅇ 2007년 - US$ 9억7천만(우리나라 수출) - US$ 3억7천만(수입): 무역흑자 US$ 6억
교역품	ㅇ 승용차, 컴퓨터부품, 금형, 무선통신기기, 기계류, 반도체 등(우리나라 수출)
	ㅇ 자동차부품, 기계요소, 유리공예품, 수동부품, 컴퓨터부품 등(수입)
투자교류	ㅇ 우리나라의 대 체코 투자 - 2007년 : 21건, US$ 73,895천 (신고기준) - 2007년 말 누계: 39건, US$ 535,730천 (투자기준)
	ㅇ 체코의 대한투자 - 없음
교민	ㅇ 약 1,350여명 (대사관 등록기준)

자료원: 주체코대사관, KOTIS, 수출입 은행(2008. 2월 최신 자료)

2. 정치 사회 동향

가. 정치 동향

2006.6.2-6.3일 양일간 4년 임기의 하원 의원을 뽑는 총선이 실시되었다. 동 총선에서 제1야당이었던 중도우파의 시민민주당(ODS; Civic Democratic Party)이 81석을 차지하면서 집권당이었던 중도좌파의 사회민주당(CSSD; Social Democratic Party)를 누르고 최대 의석을 차지하면서 다수당이 되었다. 그러나 선거결과 시민민주당이 연립정부 파트너로 삼은 중도성향인 기독민주당(KDU-CSL; Christian Democratic Union-Czechoslovak People's Party)과 처음으로 의회에 진출한 녹색당 (SZ; Green Party)의 의석을 합해도 하원의 과반수 미달하는 100석으로, 사회민주당과 공산당 (KSCM; Communist Party of Bohemia & Moravia) 의석 합계인 100석과 동일한 좌우 동석이 되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였다.

2006년 총선결과 정당 별 하원의석 수

정당명	득표율	하원 의석
시민민주당(ODS)	35.4%	81석
사회민주당(CSSD)	32.3%	74석
공산당(KSCM)	12.8%	26석
기독민주당(KDU-CSL)	7.2%	13석
녹색당(SZ)	6.3%	6석
총 계		**200석**

자료원: 체코통계청(2007.12월 최신자료)

이에 따라 시민민주당 중심의 정부구성을 위해서 내각이 하원승인 절차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사회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시민민주당 총재인 Topolanek과 전 총리이자 사회민주당 총재인 Paroubek 간에 정국 타개를 위하여 양당 간 "대연정" 또는

사회민주당이 1998-2002년 집권 시 시민민주당과 맺었던 것과 비슷하게 제2당이 1당의 소수연립정부 구성에 협조하되 정책 집행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야당 협정 (opposition agreement)"에 대하여 수차에 걸친 협상에 돌입 하였으나 결국 양자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실패하였다. 결국 Klaus 대통령이 9.4일 Topolanek을 총리로 지명하면서 구성된 시민민주당 소수내각은 의회의 신임에 실패하였다. 2006.10.20-21일 간 있었던 상원의원 및 지방정부 선거에서 시민민주당이 다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2차 총리 지명을 미뤄왔던 Klaus 대통령이 11.8일 다시 Topolanek 총재를 총리로 지명하였다. 이에 따라 재개된 시민민주당과 사회민주당 사이의 협상도 결국 합의 도출에 실패하였으며, 결국 시민민주당은 기독민주당 및 녹색당과의 연립내각을 구성 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득한 후 하원 신임투표에 상정하였으며, 2006년 말에 사회민주당에서 탈당 하여 무소속이 된 하원의원 2명(Mr. Pohanka, Mr. Melcak)이 표결에 불참하여 간신히 2007.1.19일 하원의 신임투표를 통과함으로써 총선 후 7개월 만에 정식으로 정부를 구성 하게 되었다. 그러나 체코의 신 정부는 하원의 과반수를 장악하지 못함에 따라 정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2008년 2월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도 현 대통령인 Vaclav Klaus 와 야당 후보자인 Jan Svejnar 간의 치열한 접전으로 2월 15일 2차 결선투표를 거쳐 Vaclav Klaus 의 재당선이 확정되었다. 현지 정가 및 유럽의 주변국가들은 Vaclav Klaus 의 재당 선을 축하하면서도 취약한 국내 정치기반으로 말미암아 사회복지분야의 개혁을 통한 재정 적자 축소등의 강력한 경제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나. 주요인사

대통령 (President)	Vaclav Klaus (ODS)
총리 (Prime Minister)	Mirek Topolanek (ODS)
상원의장 (President of the Senate)	Premysl Sobotka (ODS)
하원의장 (Chairperson, Chamber of Deputies)	Miloslav Vlcek (CSSD)
부총리 겸 지역개발부장관 (Regional Development)	공석
부총리 겸 환경부장관 (Environment)	Martin Bursik (SZ)
부총리 겸 노동사회부장관 (Labour & Social Affairs)	Petr Necas (ODS)
유럽문제 담당 부총리 (European Affairs)	Alexandr Vondra (ODS)
내무부장관 (Interior)	Ivan Langer (ODS)
외무부장관 (Foreign Affairs)	Karel Schwarzenberg (SZ)
국방부장관 (Defence)	Vlasta Parkarova(KDU-CSL)
산업무역부장관 (Industry and Trade)	Martin Riman (ODS)
보건부장관 (Health)	Tomas Julinek (ODS)
법무부장관 (Justice)	Jiri Pospisil (ODS)
재무부장관 (Finance)	Miroslav Kalousek(KDU-CSL)
교육·청년·체육부장관 (Education, Youth and Sports)	Ondrej Liska(SZ)
교통부장관 (Transfort)	Ales Rebicek (ODS)
농무부장관 (Agriculture)	Petr Gandalovic (ODS)
문화부장관 (Culture)	Vaclav Jehlicka (KDU-CSL)
정부입법위원회 의장 (Legislative Council)	Cyril Svoboda (KDU-CSL)
무임소장관 (Minister without Portfolio)	Dzamila Stehlikova (SZ)

주: 1. ODS 시민민주당(Civic Democratic Party) KDU-CSL 기독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Union) SZ 녹색당(Green Party) 임
2. 부총리 겸 지역개발부장관은 Jiri Cun다의 2007.11.7일 사임으로 공석

* 자료원: 체코 정부사이트 (2007.12월 최신자료)

다. 선거제도

대통령은 상,하원합동의회에서 5년마다 선출(간접선거)되며,총리는 하원최다득표정당 에서

대통령이 지명 후 의회의 신임투표 과정을 거쳐 선출된다.상원의원은 국민직접선거에 의해 총81석 중 2년마다 3분의 1씩 선출되며, 하원의원은 국민직접선거에 의해 매4년마다 선출.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경제 문제와 관련 양국간 이슈는 없으며, 정치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참여 정부의 한반도 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2004년 5월 체코는 북한에 대사관(대리대사급)을 개설하였으며 동 대사관을 활용하여 EU 회원국으로서 EU의 대북 정책과 상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역할 수행을 희망하고 있다.

가. 주요 외교일지

○ 양국 무역사무소 설치 협정(89.11)
○ KOTRA 프라하 한국 무역관 개설(90.2)
○ 양국 외교 관계 수립(90.3)
○ 주 체코슬로바키아 대사관 개설(90.6)

나. 양국간 체결 협정

○ 무역 및 경제 협력 협정(90.10 서명, 91.4 발효)
○ 항공 협정(90.10 서명 및 발효)
○ 항공 협정 개정(편명 공유 조항 등 신설) 협상 타결(04.5)
○ 이중과세 방지 협정 및 투자 보장 협정(92.4 서명, 95.3 발효)
○ 문화 협정(94.10 서명, 발효)
○ 사증 면제 협정(94.10 서명, 94.11 발효)
○ 과학 기술 협력 협정(95.3 서명, 95.4 발효)
○ 원자력 협력 협정(2001.3 서명)
○ 한.체코 사회보장협정(2007.12.14 서명)

II. 경제

1.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2003년부터 회복세로 돌아선 체코경제는 2004.5.1일 EU 가입에 따른 효과로 인한 고정자본 투자 및 외국인 직접 투자 증가와 수출 호조에 힘입어 2004년 4.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005년에는 고유가 등에 따른 서유럽의 경기 둔화와 가계 소비 증가율이 2.8%에 그쳤음에도 불구하고 중동부유럽 국가 중 가장 높은 6.5%의 경제성장률을 보이는 등 EU 가입 이후 고도 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2006년에는 가처분소득의 증가에 따른 내구소비재 판매가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그 동안 부진하던 소매판매가 불변가격 기준 연간 6.5%나 증가하, 수출이 달러화 기준 22.0%나 급증한 데 힘입어 경제성장률이 예상을 뛰어넘어 전년도와 비슷한 6.4%를 기록하였다.2007년 들어서도 전년도에 이어 소매경기의 호조 및 수출호조의 영향으로 1/4분기에 6.4%의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 6.3%, 3/4분기 6.0% 성장을 기록하면서 2005년 이후 지속되어온 6% 이상의 고성장세를 유지하여 3/4분기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6.3%의 성장률을 보였다.
그러나 9월부터 소매판매 증가세가 둔화를 보이고 있고, 산업생산 증가세도 1-7월 중

10.5%에서 8월 5.5%, 9월에는 2005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1.2% 증가에 그치는 등 인력난 등에 따른 성장잠재력의 약화로 2007년 하반기에 경기의 정점을 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2007년 경제성장률은 지난해보다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8년에는 최대 수출시장인 EU 지역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른 식료품 등의 부가세 인상영향으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소매판매가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여 경제성장률이 2007년보다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체코 재무부와 EU 집행위는 2008년도 경제성장률을 5.0%로 전망하고 있으며 EIU, OECD, IMF는 4.6%로 전망하고 있는 등 내년도 성장률은 5.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가. 재정 적자

현재의 EU 기준에 따르면 유로화 도입 조건으로 재정 적자는 GDP의 3%를 넘지 않도록 정해져 있다. 하지만 EU 통계청에 따르면 체코의 공공 재정적자 규모는 금융부문 구조 조정 등의 여파로 2003년에 GDP의 6.6%에 달했으며, 이는 EU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06년 말 기준 체코의 총 외채는 583억 달러 규모로 이는 GDP의 41%에 달하고 있다.

2004년에는 금융 부문의 구조 조정이 마무리되고 정부 기금으로부터의 수입 증가와 긴축재정에 힘입어 공공 재정 적자 규모가 당초 예상되었던 GDP의 3.9% 수준보다 크게 낮아진 2.9%로 개선되었으나, 2005년에는 재정개혁의 지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의 지출 증가로 다시 3.5%로 확대되었다.

재정적자는 2006년에 세수증가 등 영향으로 GDP의 2.69%로 낮아졌으나, 금년도 예산이 GDP의 4% 적자를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는 등 2007년에는 다시 3% 선을 넘어서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당초 목표였던 2008년까지 GDP의 3% 이내 달성이 불가능 한 실정에 있어 체코의 유로화 공식 사용을 늦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유로화의 공식 도입시기에 대한 공식적인 목표연도를 설정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체코의 유로화 도입은 빨라야 2012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인플레이션

크라운화의 강세와 식료품 및 의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임금 및 석유 가격 상승에도 불구 하고 2003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1%에 그쳤으나, 2004년에는 EU 가입에 따른 부가 가치세 및 Excise tax 변경 등의 영향과 유가 상승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8%를 기록 하였다.

2005년에는 노동 생산성의 빠른 향상에 따른 단위 당 노동 비용 상승률의 둔화와 크라운화의 강세 및 소매업의 가격 경쟁 심화 등의 영향으로 유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어 물가 상승률이 1.9%에 그쳤으나, 2006년에는 연초의 전기료 및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및 담배 소비세 등의 인상과 석유 가격 상승 영향으로 2005년 보다 높은 2.5%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기록하였다.

2007년 들어 정부규제 주택임대료의 대폭 인상과 공공요금 및 소비세 인상 등 영향에도 9월까지 지난해와 비슷한 2.8% 수준을 보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고유가와 농산물가격

상승의 여파로 크라운화 강세와 4차례에 걸친 중앙은행의 금리인상에도 불구하고 11월에는 지난 6년간 가장 높은 연율 기준 5.0% 상승을 기록하는 등 그 동안 유지되어온 물가안정 기조가 무너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른 부가세 인상뿐 아니라 에너지가격 등 공공요금도 인상될 예정으로 있어 높은 물가상승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CSOB 은행 등은 내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 고용 및 임금

경기호조와 외국 투자기업들의 진출러시로 인한 고용 증가로 2004년에 8.3%에 달했던 실업률이 2006년에는 7.1%까지 하락한 데 이어 2007년 들어서도 3/4분기에 1997년 이후 최저인 5.2%까지 떨어지는 등 실업률이 빠른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2007년 10월에 기업들이 노동사무소에 등록한 구인요청이 1991년 이후 최대인 14만 명 이상에 달하고 대학졸업자의 실업률이 3/4분기 2.1%에 그칠 정도로 기업들이 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어 실업률 급감세는 당분간 지속되어 2008년에는 실업률이 5% 이하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빠른 실업률 하락에 따라 금년 3/4분기까지 월평균 경상임금 인상률이 7.6%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CZK 20,207이었던 월평균 경상임금이 3/4분기에는 CZK 21,470을 기록하였다.

2008년에도 인력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물가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임금인상 압력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대외 부문

2004년 이후 EU 가입에 따른 역내 교역의 활성화와 체코 생산품의 경쟁력 향상 및 외자기업의 증가 영향으로 대외 교역이 활황을 보이고 있다.

2004년에 수출이 달러화 기준 37.9%가 증가하고 수입은 33.2%의 증가를 나타내면서 무역수지적자 규모가 10억 달러로 대폭 개선된 데 이어, 2005년에는 수출이 16.1% 증가하는 호조를 지속한 반면 수입은 11.9% 증가에 그쳐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1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면서 구 동구권 국가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국에 진입하였다.

2006년에도 크라운화의 강세에도 불구하고 주 수출시장인 서유럽 국가들의 경기 회복과 노동 생산성 향상에 따른 체코 산 제품의 경쟁력 강화, TPCA의 완전가동에 따른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수출이 전년대비 22.0%나 증가한 9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사상최대 규모인 1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였다.

2007년 들어서도 10월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8.4%나 증가한 990억 달러를 기록한 데 힘입어 수입도 26.4%나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지난해 연간규모를 두 배 이상 넘어선 36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무역수지 흑자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체코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의 경우 국영 통신회사인 Cesky

Telecom 등의 매각에 따른 외국인투자 확대에 힘입어 2005년에 미화기준으로는 사상최대, 현지화 기준으로는 2002년도 이후 최대 규모인 117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였으며, 2006년에도 60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는 등 호조를 지속하였다.

2007년 들어서도 현대자동차 투자 등에 힘입어 3/4분기까지 외국인 직접투자가 지난해 연간보다 많은 57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호조가 계속되고 있다.

마. 환 율

체코 크라운화는 외국인 투자 자금의 지속 유입과 체코의 EU 회원국 가입에 따라 2004년 이래 지속적인 강세를 보여 월평균 환율 기준 2004년 12월말 EUR1=30.465였던 환율이 2006년 12월에는 EUR1=27.777을 기록하였다.

체코 국영 통신 회사(Cesky Telecom)의 민영화 등 외국인 투자의 대거 유입 영향으로 2005년 2월에 1유로 당 30크라운 선이 무너진 데 이어 2005년 12월에는 29크라운 선이, 2006년 12월에는 28크라운 선이 무너지는 등 빠른 상승세를 보여 왔던 크라운화는 2007년 들어 외국인 투자자들의 과실송금 증가와 신정부의 재정개혁 방안에 대한 시장의 불안 등으로 3월 말 이후 약세로 전환되어 28크라운 선에서 안정추세를 보였으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에 따른 국제적인 금융불안과 무역수지 흑자 확대, 중앙은행의 이자율 인상 등 영향으로 7월부터 다시 강세로 전환되어 10월말에는 1유로당 27크라운 선이 무너진 데 이어 12월 들어서는 이자율 추가인상에 대한 기대 등으로 잠시 26크라운 선을 돌파하는 등 가파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체코 크라운화는 체코 경제가 건실하고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있어 유로화 사용 이전까지 강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자료원: 체코 재무부, EIU, IMF, OECD 자료 종합(2007. 12월 최신 자료))

2. 주요 산업 동향

가. 개관

체코의 유럽에서 일어난 산업혁명의 중심지 중 하나로 오랜 산업 역사를 보유하고 있다. 합스부르크제국으로부터 독립한 1918년부터 독일에 합병된 1938년까지 체코슬로바키아는 특히 엔지니어링 분야에 강점을 보유한 세계 10대 산업국으로 다양한 산업기반을 갖춘 세계 최고수준의 선진국 위상을 보유하였다.

1948년 공산화 이후 체코의 산업은 중앙 계획경제의 도입에 따라 중공업 위주로 재편되면서 산업구조의 왜곡을 가져왔으나 1989년 자유화 이후 시장경제로의 전환과정을 거치면서 제조업과 1차 산업의 GDP 비중이 1990년의 48%와 8%에서 2006년에는 27%와 4%로 낮아진 반면 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모하고 있다.특히 90년대 중반부터 산업 중심이 첨단, 고부가가치 분야로 옮겨지고 있으며, 90년대 후반부터 크게 확대되고 있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가속화 시키고 있다.

주요 산업별 GDP 비중(%)

	2004년	2005년	2006년	2007.1-9월
농림어업	3.3	2.9	2.6	3.2
광업	1.4	1.4	1.4	1.3
제조업	26.8	26.4	26.7	27.8
전기.가스.수도	3.9	3.7	3.7	2.9
건설업	6.5	6.7	6.4	6.2
도소매업	11.5	12.7	13.3	13.0
호텔.요식업	2.2	2.1	2.0	1.9
운송,통신업	10.7	9.9	10.3	10.3
금융업	3.5	3.2	3.5	3.6
부동산업	13.0	13.8	13.4	13.4
기타 서비스업	17.2	17.2	16.7	16.4

주: 경상가격 기준임
자료원: 체코 통계청(2007.12월 최신자료)

나. 주요 산업동향

1) 건설업

체코의 건설업은 자유화 이후 국유기업의 민영화와 함께 새로운 민간기업들의 등장으로 빠르게 민영화가 추진되어 1996년까지 건설업체의 99% 이상이 민영화되었다.

체코 내 대규모 아파트 건설은 자유화 이후 아파트 공급을 주도하던 대기업들의 몰락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건설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대 후반의 약 50%에서 2004년에는 4.3%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에 따른 공장건설의 증가와 도로건설 등으로 건설경기가 활기를 띠기 시작하여 건설업 매출이 2001년에 9.6% 증가하였다. 2002년에는 2.5% 증가에 그쳤으나 2003년에는 2002년도 대규모 홍수에 따른 보수공사의 증가로 8.9% 증가하는 호조를 보였으며, 2004년에는 프라하 국제공항 확장 공사 및 고속도로 건설 등 사회 간접 자본 투자 활기로 불변가격 기준 전년대비 9.7% 증가하는 호경기를 보였다.

2005년에는 상반기에는 건설 경기 부진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업 매출이 불변가격 기준 4.2% 성장에 그쳤으나, 2006년에는 사회간접자본 건설 등 대규모 공공건설과 주택 및 공장건설이 상반기에 활기를 띠면서 건설업 매출이 6.6% 증가를 보이는 등 건설경기가 호조를 보였다.

2007년 들어서도 공장 및 2008년 부가세 인상에 따른 주택건설이 상반기에 호조를 보이면서 건설노무자 인력부족 및 건자재난에 따른 하반기의 건설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3/4분기까지 5.4%가 성장을 보였다.

(자료원: EIU, 체코 통계청,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7. 12월 최신자료)

2) 광업

체코는 매우 다양한 광물을 보유하고 있으나 석탄을 제외하고는 모두 소량에 그치고 있고 경제성이 떨어져 대부분의 광물 광산은 폐쇄된 상태로 국내 수요의 대부분을 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석탄은 전력생산의 주요 에너지원이 되고 있으며 북부 모라비아 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탄광들은 90년대 들어 과잉인력으로 구조조정을 거쳐 1995년까지 소규모 탄광들은 모두 폐광되었으며, 대규모 탄광에서도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거쳐 1990년에 186,111명에 달했던 근로자 수가 2005년 말에는 5만 2천명으로 축소되었다. 2000년 9월 Temelin 원자력발전소가 가동하면서 탄광들의 구조조정 압력이 계속되고 있다.

국영 석탄업체 2개사의 영업실적은 가스생산으로의 사업다각화와 발전소 인근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으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체코 최대의 갈탄 생산업체인 Severoceske doly(SD)의 정부지분 55.792% 매각을 통한 민영화는 실업률이 높은 동 지역의 실업문제 등에 따른 정치적 이해로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체코 정부는 2005년 7월 체코 최대의 전력회사로 동 탄광의 최대 수요업체인 CEZ에 SD를 매각하려 했으나 CEZ도 국영업체이고 이미 동 탄광의 지분 37.31%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극심한 반대에 부딪쳐 좌절되는 등 계속 지연되어 CEZ는 2위의 갈탄 생산업체인 MUS(Mostecka uhelna)의 매입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체코의 무연탄은 2010년까지는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갈탄의 경우는 향후 25년간 채굴이 가능 하다.

체코의 원유 및 가스 생산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6년 1월초 Ceskoslovenske naftove zavody(후에 Ceskoslovenske naftove doly로 이름 변경)사 설립, 본사를 Hodonin에 두고 체코슬로바키아 전역을 대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다. 이후 동사는 Moravske naftove doly(MND)로 이름을 바꿔 체코 내 원유 및 천연가스 탐사 및 채굴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5월 1일 주식회사로 변경되었으며 이후 지질학적으로 원유 및 천연가스 부존 가능성이 높은 모라비아 동남부 지역도 담당하고 있다. 이곳은 이미 탐사된 지역이기는 하나 첨단 탐사 공법을 이용한 새로운 원유 및 가스 발견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외에 파키스탄, 터키, 스페인 및 북해 등 해외에서의 광범위한 탐사활동도 병행 되고 있는데, 2007년에는 러시아의 원유회사인 Nikolayevkaneft와 VostokInvestNeft를 매입하고 러시아에서의 가스 및 원유 채굴권을 확보하였다.

(자료원: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7.12월 최신자료)

3) 석유화학산업

체코 석유화학산업의 부문별 매출은 연료 57.1%, 난방용 유류가 11.5%, 윤활유 및 아스팔트 11.0%, 석유화학 원재료 16.8%, 기타 정유제품 3.6%의 비중을 각각 보이고 있다.

Ceska rafinerska, a.s.의 경우 Litvinov 및 Kralupy 정유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Unipetrol, a.s. 및 Agip Petroli, Du Pont Conoco, Shell 등의 다국적 기업들이 공동으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연간 원유 정제 능력은 7.5백만 톤에 이르고 있다.
Paramo, a. s. Pardubice사는 1994년 1월1일부로 설립된 회사로 연간 1백만 톤의 원유

정제 능력을 가지고 있다.

Koramo, a.s. Kolin 사는 1994년 7월 1일 설립된 회사로 원유를 직접 정제하지는 않고 석유화학 반제품을 윤활유, 난방용 유류, 그리스 및 바셀린 등으로 가공하고 있다.

Ostramo-Vlcek and comp. s.r.o. Ostrava사는 순수 민간 회사로 이전에 국영 기업이었던 Ostramo사가 1992년 1차 민영화 당시 Vlcek씨에게 직접 매각된 바 있으며 현재 다수 지분은 INTECO s.r.o.사가 보유하고 있다. 동사는 지난 1997년 체코를 휩쓴 대홍수로 생산설비가 폐허화되어 큰 타격을 입은 적이 있지만 현재는 정상 가동되고 있다.

Vialit International. Ltd.사 또한 순수 민간회사로 체코 정유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한 수준이다. 현재 오스트리아의 Vialit사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아스팔트를 구매하여 아스팔트 제품 및 역청 혼합물을 생산하고 있다.

(자료원: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7.12월 최신자료)

4) 에너지 산업

체코의 주요 국내 에너지원은 석탄으로 전체 기초에너지 공급의 절반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석유와 가스 생산량은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현재 석탄 채굴량을 기준으로 체코의 무연탄 매장량은 2010년 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갈탄의 경우 향후 25년 정도 채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산주의 정권 말기 동안 체코의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석유, 원자력 및 천연가스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련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1995년 독일의 바바리아 지방에 있는 Ingolstadt로부터의 파이프라인이 완성되기 전 까지는 러시아가 체코에 대한 유일한 석유 공급원 역할을 하였다. 1997년 5월 노르웨이와의 계약에 따라 향후 20년간 체코 천연가스 수요량의 20% 이상을 노르웨이로부터 공급 받기로 함에 따라 에너지원의 러시아에 대한 의존은 종전에 비하여 낮아지고 있다.

2005년 기준 체코의 전력생산량은 82.6백만MWh 이중 66%가 화력발전이며, 나머지가 원자력 및 수력발전으로 생산되고 있다. 체코 정부는 전통적인 에너지 과소비 산업구조와 석탄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 따른 환경문제 때문에 중·동구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야심적인 원자력 발전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나 1989년 이후 안전기준 강화에 따른 소요비용의 급격한 증가 등의 문제로 1983년에 시작한 남부 보헤미아 지역의 Temelin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2000년 9월에야 비로서 1기 원자로가 가동을 시작한 데 이어 2기 원자로가 2003년에 발전을 시작하였다. 체코에는 Temelin 원자력 발전소 외에도 DUkovany 원자력 발전소가 각각 440MW 규모의 4개 원자로를 가동하고 있다.

체코의 전력산업 민영화는 8개 전력 공급업체와 고압 송전선망과 함께 체코 전력공사(CEZ) 의 정부지분 67.61% 매각을 위한 2002년 12월 국제입찰이 실패함에 따라 체코 정부가 2002년 3월 동 매각계획을 취소하였으며, 현재 전체지분의 16%를 주식시장을 통해 매각할 계획으로 있다. 체코 전력생산의 72%를 장악하고 있는 CEZ는 2003년 에 체코 내 8개 전력 공급업체 중 5개사를 인수함으로써 국내 전력부문에서의 영향력을 확대 하였는데, 2007년에는 헝가리의 MOL사와 합작으로 2개의 가스 화력발전소 건설을 발표하는 등 중부유럽 최대의 전력회사로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한편, 체코의 전력시장은 경쟁체제로

전환 중으로 현재 연간 9gwh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대규모 수요자의 경우 전력 공급회사를 선택할 수 있으며, 2006년부터는 모든 사용자가 공급 회사를 자유로 선택하도록 완전 자유화되었다.

가스산업 민영화는 체코 가스시장의 80%를 장악하고 있는 국영가스회사인 Transgas가 2001년에 독일의 RWE사에 매각되어 RWE Transgas가 됨으로써 완료되었다. 천연가스의 경우에도 2005년부터 대기업들은 공급업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2006년 말 까지는 천연가스 시장이 완전 자유화되었다.

(자료원: 체코 통계청 및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7.12월 최신자료)

5) 의류·섬유산업

체코의 의류, 섬유 산업은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수출지향적 특성을 보여왔다. 하지만 체제 전환 이후 의류 및 섬유류 부문의 무역 흑자 규모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오다가 중국산 등 아시아로부터의 수입증가 영향으로 2004년부터는 적자로 돌아섰으며 이와 같은 추세는 지속될 전망이다.

체코의 의류, 섬유 산업은 중국산 등의 시장진출 증가와 원료가격 상승, 크라운화의 강세 등 영향으로 2006년에만 체코산 의류 매출이 1/6이 감소하고 섬유류 매출도 4% 감소를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동 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수도 2006년 말 현재 5만 9천명으로 2005년 말에 비하여 9.2% 감소를 나타내었다.

현재 체코 의류, 섬유 산업에는 750개사가 있는데 2006년에만 Tepna Nachod, Alma Nova Bystice 등이 문을 닫았으며, 2007년 들어서도 체코 최대의 섬유원단 생산업체인 Tiba사와 Texlen사가 부도가 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료원: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7.12월 최신자료)

6) 제약·의료산업

체코의 제약 및 의료 산업은 체코 제조업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자본주의로 체제 전환 이후 초기 수년간은 매출이 계속 감소되어 1994년에는 1990년 당시의 90% 수준까지 떨어져 최저 수준을 기록한 바 있는데 이는 저조한 국내 수요 및 의약 산업의 무역 상황 변화 그리고 서구 시장 지향 증가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1996년 이후 생산 및 매출이 점차 증가 추세로 회복되어 증가율이 전체 제조업 증가율을 상회하게 되었는데 1997년에는 의약산업 부문이 매출액 기준으로 금속산업, 식품산업, 운송 엔지니어링 산업 및 기타 엔지니어링 산업에 이어 5위를 기록할 정도로 성장했다.

이 부문의 특징으로 Unipetrol, CHZ Sokolov 및 Spolana Neratovice 등 일부 전략 업체들의 경우 아직도 체코 정부가 34% 이상의 지분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중간규모의 업체들이 동 분야의 매출 및 부가가치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종업원 1천명 이상 대기업의 매출 비중이 61.3%에 비해 종업원 250명 이상 1천명

미만의 중간규모 업체들의 매출 비중이 21.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로는 중부 보헤미아의 Ustinad Labem 및 수도 프라하에 매출이 집중되고 있는 반면, 매출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는 화학산업 비중이 낮은 Jihlava, Hradec Kralove 및 Plzen 등지가 꼽히고 있다. 체코 국내 소비는 매년 10-20% 정도의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체코 국내 업체들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함에 따라 수입이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자료원: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7.12월 최신자료)

7) 철강·금속산업

철강·금속 산업은 Nova Hut이 2003년에 Mittal Steel에 매각된 데 이어 2005년 11월 마지막으로 러시아의 Evraz Group이 Vitkovice Steel의 정부지분 98.96%를 인수함으로써 민영화가 완료되었다. 현재 160여 업체들이 철강 및 금속산업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국영 기업이었던 금속부산물 가공업체 Kovosrot의 민영화에 따라 스크랩 취급 업체들 모두 치열한 경쟁 상태를 겪고 있는데 초기에는 금속부산물 구매단계에서 치열한 경쟁을 보였으나 지금은 후 판매 및 마케팅 부문에까지 경쟁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

체코 내 선철 생산은 철광석 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주로 우크라이나 및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다. 체코의 철강 생산량은 2003년에 678.3만 톤이었으며 2004년에는 전년보다 3.7% 증가한 703.2만 톤을 기록하였으나 2005년에는 618.9만 톤에 그치는 부진을 보였다. 그러나 2006년에는 국제수요의 회복으로 지난 해 부진에서 벗어나 최고조에 달했던 2004년 수준을 거의 회복한 약 690만 톤을 생산하였다.

한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등 신규 EU국들의 철강 생산량은 2010년까지 200만 ~ 300만 톤 더 늘어난 2,500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 4개국들의 철강 생산량은 EU 전체 철강생산량의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국가의 국내철강 수요는 1,500만 톤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EU의 철강산업은 이전의 종업원 90만 명에서 현재는 26만 명까지 대폭적으로 인력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을 단행해왔기 때문에 체코에서도 2003년 2만8천명 이었던 철강산업 종사자가 2006년에는 23,780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까지는 22,000명 수준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체코는 이런 구조조정을 통해 철강산업의 노동 생산성 수준을 기존 EU 15개국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체코 최대의 철강 생산업체는 국내 철강생산량의 50%를 차지하는 Arcelor Mittal Ostrava (종전의 Ispat Nova hut)로 동사는 2004년에 약 320만 톤의 철강을 생산한 데 이어 2005년에는 267만 톤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는 306만 톤을 생산하여 2004년 생산량을 거의 회복하였다. Moravia Steel Group의 Trinecke zelezarny사가 2005년에 243만 톤을 생산 하여 전체 생산량의 1/3을 차지하였으며, Vitkovice Steel사는 2006년 기준 연간 95만 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자료원: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7. 12월 최신자료)

8) 기계산업

체코 기계산업은 오랜 역사와 함께 상당한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부가가치 또한 대단히 높은데 1990년 이후 자본주의로 경제 체제가 전환되면서 시장 개방 및 경쟁 격화에 따라 생산기반의 구조조정이 대폭 이루어져 왔다.
지난 몇 년간 지속된 기계류의 수요 감소는 일반 기계류 자체가 투자재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경제 침체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외국인 직접 투자가 늘어나면서 신규 설비 투자에 따른 기계류의 수요도 차츰 되살아 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체코의 기계류 산업은 1천 개 이상의 업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절반 이상이 종업원 49명 이하의 소규모 업체들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종업원 1천명 이상의 대기업은 업체수로는 48개 정도에 불과하나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매출 비중은 36%로 나타나고 있다.

(자료원: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7.12월 최신자료)

9) 수송기기산업

체코의 자동차 산업은 1905년부터 자동차를 생산하기 시작하여 세계 3위의 오랜 역사를 지닌 스코다 자동차가 말해주듯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이미 19세기 후반에 오토바이 및 철도 차량 생산이 개시되었으며 이러한 초기 발달에 힘입어 1920년 이후 항공기 제작 산업에도 부수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1945년 이후 운송장비 생산은 체코 제조업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며 스코다 이외에도 SKODA Plzen, TATRA Koprivnice, AVIA Prague, AERO Prague, PRAGA Prague, MSV Studenka, Vagonka Ceska Lipa, CZ Strakonice, LET Kunovice, MORAVAN Otrokovice 및 많은 다른 업체들의 생산 제품들이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개발 또한 활발하게 추진되어 왔다. 이런 운송 장비 부문은 생산규모, 매출 및 수출 모두에 있어 체코 제조업의 주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다.

체코에서 생산된 운송 장비들은 거의 세계 전 지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전차, 디젤 엔진 그리고 제트기 조종 훈련기계 등은 세계시장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지금까지 체코에서 생산되어 공급된 물량을 보면 2륜 및 4륜 자동차가 14백만대, 1만 2천대 이상의 트롤리 버스, 3만 7천대 이상의 레저, 운송 및 군용 비행기와 글라이더, 2만 2천대 이상의 기관차, 25만대 이상의 철도차량 그리고 2만 3천대 이상의 전차 등으로 특히 전차(tram)는 현재 전세계에서 운행 중인 4대중 1대가 체코산일 정도로 많이 공급되어 있다. 가장 중요한 업체인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1991년 4월 독일의 폴크스바겐 자동차가 정부 지분을 인수하여 현재 동 사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항공기 제작업체의 민영화도 마무리되어 체코 운송산업에 투자된 외국 자본은 거의 150억 크라운(미화 약 428백만 불)에 달하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인 144억 크라운이 자동차 부문에 투자되었으며 외국 업체가 다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들로는 SKODA Mlada Boleslav VW Group(독일), KAROSA Vysoke Myto Renault V.I.(프랑스), AVIA(미국, 인도), AUTOPAL Novy Jiein CCD Ford(미국), ROCKWELL LVS Liberec Rockwell(미국), BSS Metaco (프랑스), MOTORPAL Jihlava Bosch-Joint venture-(독일), MOTOR JIKOV Ceske Budcjovice-Joint venture-(독일), AKUMA Mlada Boleslav Caminor hold(스위스), TRW(미국), VAGONKA Ceska Lipa DWA Berlin(독일) 등이 있으며 이외에 자동차 타이어 생산업체인 Barum Continental 또한 독일 Continental 타이어에서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체코 내 관련 업체들의 국내외 시장에서의 외국 업체들과의 경쟁 능력은 기술개발, 제품

혁신 및 생산 설비 현대화 투자에 크게 좌우되고 있으며 체코 정부의 기술 개발 지원 또한 특히 초기 단계에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의 결과가 스코다 자동차의 파비아 및 옥타비아 모델, 카로사 버스 그리고 많은 자동차 부품 관련 업체들의 성공으로 나타나고 있다.

운송 장비 산업은 단일 부문으로 체코 내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산업으로 스코다 자동차 1개사가 체코 전체 수출의 20%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체코 내 운송장비 판매 또한 매년 30%이상의 신장률을 보일 정도로 급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운송장비 생산 부문은 생산성 증가율이 실질 임금 상승률을 앞지르는 많지 않은 산업 부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스코다 자동차에 대한 대규모 투자는 유럽에서도 가장 현대적 생산설비를 갖춘 공장으로 만들어 유럽 시장에서 스코다 자동차가 호평을 받는 배경이 되고 있다. 반면 트럭 생산은 부진을 보여 대형 트럭 생산업체인 Tatra는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2002년 4월 기공식을 가진 도요타와 PSA Peugeot Citroen이 합작한 TPCA가 2005년 3월부터 양산에 들어간 데 이어 2006년부터는 연간 생산능력인 30만대를 생산하면서 완전 가동에 들어가 있으며, 현대자동차가 체코투자를 결정하여 2006년 12월 10일 공장건설을 시작으로 2008년 말부터 생산을 시작할 계획으로 있는 등 자동차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유럽 내 주요 자동차 생산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자료원: EIU, 체코 산업무역부 자료 등 종합, 2007. 12월 최신자료)

3.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중부유럽자유무역협정 (CEFTA: Central European Free-Trade Agreement)

사회주의 경제블록 해체 이후 대서방 교역의존도 급증에 따른 상호교역 축소 방지와 EU 가입 원활화 등을 위하여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의 4개국에 의하여 2001년까지 완전한 자유무역지대 완성을 목표로 1992.12월 출범하였다.

이후 1996년 슬로베니아, 1997년 루마니아, 1999년 불가리아, 2003년 크로아티아가 가입하였으며 원래 동 자유무역협정을 창설했던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는 2004년 EU 가입에 따라 동 협정에서 탈퇴함에 따라 발칸제국들의 자유무역협정이 되었다.

2006.12월 루마니아에서 개최된 CEFTA 정상회의에서 알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몰도바, 몬테네그로, 세르비아 및 코소보(유엔임시행정처가 대행) 등 6개국이 신규 가입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발칸지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발 돋음 하였다.

나. CEI (Central European Initiative)

1989.11월 공산정권 붕괴 이후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헝가리, 유고의 4개국 주도하에 역내 분쟁 해결 및 중부유럽 내 분열방지를 위한 지역협력체인 중부유럽 4개국 회의(Quadrilateral Coperation)으로 창설되었으며, 1992.7월 빈 정상회의에서 명칭을 “Central European Initiative)”로 변경하고 회원국을 10개국(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마케도니아)으로 확대되었고 현재의

회원국은 알바니아, 벨라루스, 불가리아, 몰도바, 루마니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를 포함하여 17개국이다.

CEI는 회원국간 정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등 각 분야에서의 협력확대를 추구하고 있으며, 14개 분야별 Working Group 운영과 연 1회 총리회의, 연 2회 외무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다. EU (European Union)

체코는 2004.5.1일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등 다른 10개국과 함께 EU의 정식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체코 정부는 2010년 이후 EMU(Economic and Monetary Union)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

라. 기타 경제기구 가입현황

WTO, IMF, OECD, EBRD 등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수출입 실적

(단위: US$ 백만, %)

연 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3	14,165	-	14,315	-	-150
1994	16,261	14.8	17,662	23.4	-1,401
1995	17,487	7.5	24,973	41.4	-7,486
1996	22,007	25.9	27,603	10.5	-5,596
1997	20,423	-7.2	24,755	-10.3	-4,332
1998	27,748	35.9	30,417	22.9	-2,669
1999	26,241	-5.4	28,078	-7.7	-1,837
2000	28,998	10.5	32,107	14.3	-3,109
2001	33,358	15.0	36,453	13.5	-3,095
2002	38,504	15.4	40,735	11.7	-2,231
2003	48,709	26.5	51,239	25.8	-2,530
2004	67,194	37.9	68,245	33.2	-1,051
2005	77,985	16.1	76,340	11.9	1,645
2006	95,143	22.0	93,430	22.4	1,713
2007(1-10월)	99,359	28.4	95,710	26.4	3,649

자료원: 체코 통계청(2007년 12월 최신자료)

나. 수출입 동향

체코의 수출입은 1993년 슬로바키아와의 분리 이후 체코 크라운의 달러화 대비 환율 급락으로 현지화 기준 수출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달러화 기준 수출입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1997년 및 1999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년 두 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빠른 속도로 증가해 왔다.

자유화 이후 서유럽으로의 수출시장 확대로 수출이 호조를 보였으나,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수입이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체코의 대외무역은 만성적인 무역수지적자 상태에 있었다. 체코의 수출은 EU 가입이 확실시 되면서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의 영향으로 2000년대 들어 빠른 속도로 증가를 보여 왔는데, 2004년에는 EU 가입에 따른 역내 교역의 활성화로 전년대비 37.9%나 증가하는 호조를 나타내었다.

특히 2005년에는 주 수출시장인 독일 등 서유럽의 경기침체와 크라운화 강세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6.1%나 증가하는 호조를 지속하면서 자유화 이후 처음으로 16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여 중동부유럽 국가 중 최초의 무역수지 흑자국이 된데 이어 2006년에도 서유럽의 경기회복과 TPCA의 본격 가동 등에 따른 자동차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년대비 22.0% 증가한 951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22.4%의 증가율을 기록한 수입의 동반호조에도 불구하고 사상최대인 17억 달러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중동부유럽 국가 중에서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기조를 정착시켰다.

2007년 들어 체코의 수출은 더욱 호조를 보여 금년 1-10월 중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28.4%나 증가한 994억 달러에 달하여 1천억 달러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이미 전년도의 두배를 넘어서고 있다.

체코의 교역은 유럽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EU 국가에 대한 수출입이 2006년 기준 각각 전체수출에서 83.9%와 70.0%를 점유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국가들과의 수출입은 각각 3.7%와 15.4%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독일과의 교역이 수출의 31.7%와 수입의 28.3%를 점유하고 있다.

다. 주요 수출입 품목

- ○ 수 출: 자동차, 기계류, 전기전자, 기초 금속제품, 철강제품, 비철금속제품, 섬유류, 가구류, 유리 및 유리제품

- ○ 수 입: 기계류,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제품, 철강 및 금속제품, 원유 및 가스, 섬유류, 식품류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한국의 대 체코 수출입실적

(단위: US$ 천, %)

구 분		1996	2003	2004	2005	2006	2007(1-10월)
수출	금 액	187,662	157,627	312,952	338,791	564,042	726,593
	증가율	42.4	44.8	98.5	8.3	66.5	60.8
수입	금 액	59,277	104,623	108,257	149,867	258,806	288,142
	증가율	21.5	4.4	3.5	38.4	72.7	40.5
무역수지		128,385	53,004	204,695	188,924	305,236	438,451
총교역량		246,939	262,250	421,209	488,658	822,848	1,024,735

자료원: KOTIS(2007년 12월 최신자료)

나. 수출입 동향

우리나라의 체코와 교역은 80년대 초부터 우리나라가 체코에 전자 및 섬유제품을 수출하고 섬유직기 등을 수입하는 구상무역으로 시작되었다.

1989년 양국간 무역사무소 교환개설 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1990년 2월에 프라하에 KOTRA 무역관이 개설되면서 양국간 통상사절단 교환방문 등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배경 하에 양국간 교역규모는 1993년 8236만 달러에서 2006년에는 8억 2285만 달러로 13년 만에 약 10배가 증가하는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와 같은 양국간 교역확대는 체코가 EU에 가입한 2004년 이후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체코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거의 매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여 왔으나 아시아의 금융위기의 여파로 전세계적인 불경기를 겪었던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연속 4년간 수출감소를 겪는 부진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매년 우리나라가 흑자를 보여왔던 무역수지도 2000년에 6122만 달러, 2001년 2586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2년부터 우리나라의 대 체코 수출이 연 40% 이상의 급증추세를 보이면서 다시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되었으며, 2004년에는 체코의 EU 가입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사상최고인 98.5% 증가율을 보여 역대 최고기록인 1997년의 1억 7천만 달러를 크게 넘어 3억 1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3억 달러를 돌파하였다.

2005년에는 자동차 등의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가전제품의 수출부진 영향으로 전년대비 8.3% 증가한 3억 4천만 달러에 그치면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한 자리수의 수출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6년 들어 자동차와 기계류 수출호조 영향으로 주력 수출상품이었던 핸드폰, 가전제품의 수출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이 전년대비 66.5% 급증한 5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5억 달러를 넘어섰다.

2007년에는 체코 내 LCD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 생산증가에 따른 평판 디스플레이, LCD 모니터, 반도체 등 전자부품류의 수출호조에다가 현대자동차 투자 등에 따른 우리기업들의 현지 진출 확대로 인한 기계류 및 자동차 부품의 수출 호조가 지속되어 10월까지 수출이 전년 동기대비 60.8%나 증가하면서 7억 달러를 넘어서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

체코로부터의 수입도 그 동안 크리스털 식기 등 유리공예품에 치중되어 왔던 수입상품이 자동차부품, 기계류 등의 다양화되면서 2005년에 전년대비 38.4% 증가를 보인데 이어 2006년에는 72.7%나 급증한 2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양국간 교역이 활성화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체코 수출은 현대자동차 및 협력업체들의 공장건설이 본격화되면서 내년에도 이에 필요한 기계류 및 자동차부품 등의 수입을 중심으로 당분간 빠른 속도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3.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 규제 제도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덤핑 등 불공정한 교역 행위로 인하여 EU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사 결과 판단될 때 EU 당국은 산업 피해 구제 조치로서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입규제 조치는 각 회원국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독단적으로 취할 수 없고 EU 차원에서 결정되며 EU 집행 위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기초하여 결정된 조치는 EU 전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1) 반덤핑

수출국의 기업이 덤핑가격으로 수출하여 수입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현재 EU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입규제조치이다.

EU 집행위는 EU기업으로부터 한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 ○ 덤핑 존재: 해당 수출국(제 3 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 ○ EU 산업에 피해 존재: 덤핑 수입으로 EU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 EU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 EU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 ○ EU집행위는 덤핑제소 입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 조사를 개시할 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2)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관세

보조금에 대한 국제적 규율은 보조금과 상계 조치에 대한 WTO의 협정에 의해 상당히 강화되었다.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하여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보조금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만 적용되고 해당 제품에 상계 관세가 부과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상계관세가 부과된다.

- ○ 수출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 ○ EU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 제품으로 인해 EU역내 산업이 시장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 ○ EU연합의 전반적 이익: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 ○ 반덤핑 조치와 마찬가지로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하나 최종 조치는 이사회에 의해 결정된다. 제소와 조사 절차는 반덤핑 조치와 유사하다.

3) 세이프가드

EU 수입제도는 자유 수입을 일반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세이프 가드 조치를 취하는데 예외적 경우란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의 경우로 EU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를 의미한다. EU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하고 case-by-case 형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반덤핑이나 상계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WTO의 세이프 가드 협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세이프 가드 조치로는 수입쿼터로 수입물량을 제한하는 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 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다. 다만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센스가 요구된다. 현재 감시제도는 일부 국가의 철강 제품에 적용되고 있다.

나. 수입 쿼터 제도

EU는 원칙적으로 수입 쿼터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WTO 협정 내에서 2004년까지 일부 섬유제품에 대해 쿼터 제도가 적용되었으나 2005년 1.1일부터 원칙적으로 전면 폐지되었다. 그러나 섬유쿼터제도 폐지 이후 중국산 섬유제품과 신발이 대량 수입되어 EU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는 업계 및 EU 회원국 정부의 압력으로 EU당국은 중국산 일부 섬유 제품과 신발류에 대해 긴급 수입제한 조치(세이프 가드)를 취하여 섬유제품에 대해서는 수입 물량을 제한하고 있는 한편 신발류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치를 취하고 있다.

다. 수입금지 품목

일부 동식물, 프레온, 등록되지 않은 의약품 및 화공품, 생화학무기 등의 수입은 금지되어 있다.

라. 수입라이센스 제도

원유, 마약, 천연가스, 무기 및 화약은 체코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로부터 수입허가를 받은 기업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다. 또한 의류, Black Coal, 일부 원자재 및 농산물을 EU 또는 EFTA 이외의 국가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도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마. Labeling 제도

체코에 수입 판매되는 모든 상품은 체코어로 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동 라벨에는 제품명, 생산자,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하며 일부의 경우 사용법이 표기되어야 한다. 식품, 음료, 식품 첨가물 및 섬유제품의 경우 원료 구성비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사. 교역관련 주요법규

체코는 유럽연합(EU) 회원국으로서 EU의 통상법규를 따른다. EU 통상정책의 실제 수단은 공동관세, 산업피해구제조치(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와 더불어 제 3국의 무역장벽 및 시장접근 정도에 관한 조사, 분석을 기초로 대외통상교섭과 협정체결 등인데 다자 또는 양자간 협의를 통해 통상 조치의 결정을 내리기도 하지만 일방적인 조치를 통해 이행하기도 한다.

1) 원산지 규정

원산지 규칙은 기타 통상조치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원산지 표기 요건 및 여타 차별적인 수량 제한 또는 관세쿼터 등과 같은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EU 원산지 규정의 기초법: 1992년 10월 12일 자 이사회 규정 2913/92

2) EU 공동관세

매년 EU 집행위는 EU 공동 관세율을 관보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부서 사이트를 참조할 수 있다.

○ 관련 사이트(TARIC)
- http://ec.europa.eu/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

3) 수출입 관련 규정

EU 수입규정(Regulation 3285/94)은 EU로 수입되는 물품에 공동 적용되는 규정으로 원칙적으로 수입물품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제한적인 시장접근을 보장한다. 단, 수입상품이 EU산업에 심각한 손실을 끼치는 것을 예방 또는 치유하는 조치로 절차 규정에 의거, 반덤핑,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 조치 등을 취한다.

수출도 마찬가지로 수출규정(Regulation 2063/69)에 의거, 개인과 기업은 특별한 제한 없이 석유와 가스를 제외한 원칙적으로 모든 상품을 수량제한 없이 제 3국에 수출할 수 있다.

단, 수출로 인해 전략적으로 중요한 상품이 결여될 위험성이 있거나 회원국의 공익상 적절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상황에서 집행위는 회원국의 요청이나 독자적인 결정으로 수출 허가제도를 취할 수 있다.

4) 통상장벽 규정

통상장벽 해소를 위해 별도의 조치가 불가피한 경우 주로 WTO제소 또는 WTO 협정에 따른 보복조치(양허 철회, 중지, 관세인상, 수량규제 도입 등)를 취한다.

5) 산업 피해 구제 조치

산업 피해 구제 조치는 수입의 급격한 증가 또는 불공정한 교역행위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될 때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로서 주로 긴급수입제한조치, 반덤핑관세부과, 상계관세부과 등을 의미한다.

상기와 같은 통상 법규 이 외에도 환경분야의 각종 규정과 산업분야에 있어서 각종 공업규격과 기술 표준 인증제도, 안전규정(CE마킹), 상품 관련 제조자의 책임제 등이 벨기에를 비롯 하여 EU 시장을 접근하는데 기술장벽이 되고 있다

4. 관세제도

가. 개황

체코는 2004.5.1일 EU 회원국에 가입하여 EU 관세제도를 따른다. EU의 주요 관세제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EU는 일반적으로 GATT(현 WTO)가입국 뿐 만 아니라 비 가입국에도 협정 관세를 부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EU와 관세동맹 체결 여부에 따라 일방 또는 쌍무특혜 관세 조치를 취하고 일부 제품에 대해 수입 관세의 감면, 면제 등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한 EU연합의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민감성에 따라 제품의 관세율이 결정된다. 예를 들어 EU산업이 완제품을 제조하는데 필요하나 EU에서 생산되지 않은 원자재 또는 반제품 등에는 낮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관세를 일시 또는 영구적으로 면제한다.

○ 관세율: 관세는 EU가 정하여 매년 발표하는 EU 관세율 표에 의하여 각 회원국 세관 당국이 징수한다.
- EU 관세율 표는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제품의 관세 분류 방식인 HS (Harmonized-System) 분류 체계를 기초로 EU가 공동으로 정한 통합분류(CN) 방식에 의해 분류 되며 관세율에는 수입 부담금과 농산물의 경우 공동농업정책에 의한 농업 분담금 등이 포함된다.

EU 집행위는 매년 관세율 표를 EU 관보를 통해 공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율에는 종가관세 (Ad-valorem Tariff)가 적용되고 석탄, 농산물 일부,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 (Specific Duties)가 적용되며 국제가격의 변화에 대하여 일정수준의 관세 유지를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페트 및 시계 일부 등에는 종량세로 관세의 상하한을 설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관세(Alternative Tariff)가 있다. 또한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 화훼류 등의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조절되는 계절

관세(Seasonal Tariff)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뿐만 아니고 수입부과금(Import Levy)을 부여한다.

○ EU 관세율은 EU 집행위 관세(CUSTOM) 사이트(TARIC)에서 참조할 수 있음:
- 해당 인터넷 사이트 주소: http://ec.europa.eu/taxation_customs/dds/en/tarhom.htm

나. 통관 시 적용되는 규정

1) 상품분류 번호

모든 상품의 수출입 시, 통관서류에 상품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하며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해당 품목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체코에서는 모든 EU회원국과 마찬가지로 8자리의 EU 상품분류제도(CN CODE)가 적용된다. 필요에 따라 수입 시 8단위보다 더 상세히 분류 된 10자리의 세번 번호가 적용될 수 있다. CN CODE 8자리 상품분류번호의 앞 6자리 까지는 HS 코드와 일치한다. 상품분류번호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므로 상품분류 기재 시 정확한 상품분류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2) 원산지규정

상품의 원산지규정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정책적 결정을 수행하는 수단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원산지규정 또한 체코에 국한된 원산지규정이 없으며 EU의 원산지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모든 상품의 원산지가 중요성을 갖는 것은 관세율을 결정하는데 기초자료가 될 뿐 아니라 GSP 수혜, 반덤핑 관세, 수입 물량 제한 조치, 심지어는 수입금지와 같은 무역정책적인 조치 적용에 근거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3) 관세부과가액

상품의 실질거래가격, 즉 송장금액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된다. 단, 인도조건에 따라 송장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송장금액과는 별도로 관세부과 가액 산정 시 반영되는 요소들이 있다. 운송료, 보험료, 로열티, 라이센스 수수료, 연구개발비 등이 그러한 것 들이다. 통관 시 관세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체코 경우 19%)와 일부 특정제품(담배, 주류, 석유제품 등)의 경우에는 물품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5. 주요인증제도

가. CE 마킹 제도

27개 EU회원국과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의 EFTA국가에 수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22개 카테고리의 품목에 CE 마킹 지침(93/68/EEC)에 의거, CE 마크를 획득, 부착해야 한다. 보안장비류의 경우 CE 마크 이외에도 체코 보험협회(CAP; Czech Insurance Association)의 기준에 따른 형식승인(homologation)을 받아야 한다. 동 형식승인은 CAP(www.cicap.cz) 또는 Testalarm (www.testalarm.cz)에서 받을 수 있다. 체코 내 규격인증은 Czech Office for Standards, Metrology and Testing (www.unmz.cz /index_en.html)에서 관장하고 있다.

CE 마킹 대상품목 및 규정 지침

품목	규정 지침
가스기기(Appliances Burning Gaseous Fuels)	90/396/EEC
사람수송용 케이블(Cableway Installation to Carry Persons)	2000/9/EC
저압 전기 기기(Low Voltage Electrical Equipment)	73/23/EEC
건설자재(Construction Products)	89/106/EEC
폭발용 기기 및 보호제품(Equipment and Protective System for used in potentially explosive Atmospheres)	94/9/EC
민간용 폭발물(Explosives for Civil Uses)	93/15/EEC
온수보일러(Hot Water Boiler)	92/42/EEC
가전 냉장.냉동고(Household Refrigerators & Freezers)	96/57/EC(에너지효율지침)
승강기(Lift)	95/16/EC
기계(Machinery)	98/37/EC
선박(Marine Equipment)	96/98/EC
의료기기(Medical Devices)	93/42/EEC
의료용 임플란트(Active Implantable Medical Devices)	90/385/EEC
시험관 치료용 기기(In Vitro Diagnostic Medical Devices)	98/79/EC
수동저울(Non-automatic Weighing Instruments)	90/384/EEC
무선전신 및 통신 말단기기 (Radio Equipment & Telecommunication Terminal Equipment)	99/5/EC
개인보호장비(Personal Protective Equipment)	89/686/EEC
단순압력용기(Simple Pressure Vessels)	87/404/EEC
압력기기(Pressure Equipment)	97/23/EC
여가용 보트(Recreational Craft)	94/25/EC
장난감(Toys)	88/378/EEC
Trans-European Conventional Rail System	96/48/EC, 2001/16/EC

○ 전자파적합성 지침(89/336/ EEC)
- 모든 전자전기 제품은 전자파 적합성 지침의 기술 규준을 준수하고 CE 마킹을 획득해야 한다.

○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 85/374/eec(1999/34/EEC 수정지침)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자 포함)는 결함이 있는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 일반제품 안전
- 92/59/EEC 지침에 의거, 제조자(수입, 유통업자)는 시판 상품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하고 위험한 제품을 시장에 내 놓아 인체나 환경에 손상을 끼쳤을 때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 환경규격
- 2000/14/EC 지침에 의거하여 실외에서 사용되는 기기는 동 지침의 소음 발생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나. 에코 라벨

에코 라벨은 친환경적 제품에 부여하는 라벨로 자율적 라벨이다.

에코 라벨은 1993년 이후 적용되는 라벨로 현재까지 2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며 4개 품목 군에 대하여 기준 제정이 추진 중이다.

그러나 이외에도 32개 품목 군에 대하여 EU 집행위와 관련 업계 단체들이 에코라벨 기준 제정의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 기준 기 제정 품목
- 세제: 일반 청소세제, 식기세척기 세제, 설거지세제, 세탁용 세제
- 기기: 식기세척기, 전구, 휴대용 컴퓨터, PC, TV, 냉동고, 진공청소기, 세탁기
- 종이제품: 복사용지, 화장지
- 가정, 정원용품: 침대메트레스, hard floor coverings, 실내용 페인트 및 안료, 토양 개선제, 가정용 섬유제품
- 의류: 신발, 섬유제품
- 관광: 캠프장 및 서비스, 관광객 편의 시설 서비스
- 윤활유: 윤활유

○ 기준 제정 추진 품목: heat pump, 비누와 샴푸, 프린트용지, 가구

○ 제정 가능성 검토 품목: 문구류, 벽지, 쓰레기봉투, 소핑백, 필기도구, 전화, 복사기, 소형 가정용 전기기기, 패션 액세서리, 장갑, 가죽제품, 스포츠 장비, 완구 및 게임, 포장지, DIY 제품, 에어컨디션류, 난방기기, 물 끓이는 시스템, 절연기, 건축부분품, 건축서비스, 소매서비스, 건조기, 금융서비스, 배달서비스, 자동차수리서비스, 자동차, 부엌용품, 위생용품 등

다. 에너지라벨

에너지 소비율에 따라 A-G 까지 에너지 효율 등급을 표시해야 한다. A는 에너지 효율성이 가장 우수한 것을 의미하며 G는 가장 낮은 것을 의미한다.

에너지 효율성을 표시해야 하는 에너지라벨 대상품목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냉동고 콤비, 세탁기, 건조기(electric tumble dryers), 세탁기-건조기 콤비, 식기세척기, 램프, 전기오븐, 에어컨 등이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 **개요**
에너지소비효율에 따라 A~G 까지 Energy 효율등급 라벨표시 및 최저효율기준, 적용에너지효율등급, 연간 에너지소비량등 표시

▣ **대상품목**
라벨표시: 냉장고, 냉동고,세탁기,식기세척기등(10 품목)
최저효율: 냉장고, 냉동고, 냉동냉장고, 보일러, 안정기 등(5 품목)

▣ **시행기관** EU 위원회(EU Commission)

▣ **근거법령**
에너지라벨링 지침(Council directive/92/75/EEC, 1992)

Energy 2000

▣ **개요**
대기전력 절감하는 제품을 보급하는 유럽의 대표적 프로그램 GEEA 와 동일기준 적용하며 같은 Energy 라벨 사용

▣ **대상품목**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시밀리, 복사기, 스캐너, 복합기,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DVD 플레이어 등(15 품목)
시행기관 : 스위스 에너지부

(SFOE: The Swiss Federal Office of Energy)

6. 지적재산권

체코는 2001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특허, 상표,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을 EU 기준 및 WTO TRIPs에 맞추어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과학 및 문학작품, 번역, 필름, 케이블 프로그램 및 간행물 등의 지적 소유권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자의 수명+70년간 유효하며 예술작품은 수명+10년, 작자미상의 작품과 필름은 처음 발간 일로부터 50년간, 잡지는 최초 간행 일로부터 10년간 법에 의해 보호되며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저작권과 같은 보호를 받는다.
상표권의 경우 특허청에 신청 후 심사기간이 8-12개월 정도 소요되며 비용은 CZK 1,000이

다. 상표권은 등록 신청 후 10년간 유효하나 상표권자의 신청에 따라 10년 기간으로 다시 갱신할 수 있으며 서면계약으로 양도할 수도 있다. 특허권의 경우 윤리나 공공이해에 반하거나 동물의 양육, 식물의 재배에 관련되거나 병진단과 의료예방에 관련된 것은 발명특허로 간주되지 않는다. 특허 신청 후 심사는 8-12개월 정도 소요된다. 특허기간은 신청일로부터 20년간이며 갱신되지 않는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디자인 등은 특허 되지 않으며 특허는 서면계약으로 양도될 수 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체코 특허청의 주소는 아래와 같다.

Industrial Property Office of the Czech Republic

ADD	Ul. Antonina Cermaka 2a, 160 68 Praha 6 - Bubenec
TEL	(420) 220-383-111
FAX	(420) 224-324-718
E-mail	posta@upv.cz
Home Page	http://www.upv.cz

7. 통관/운송

가. 통관

2004.5.1일 EU 가입으로 통관절차는 EU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EU 국가에서 통관된 제품은 별도의 통관절차 없이 체코에 들어올 수 있고 체코에서 통관된 제품도 자유롭게 여타 EU 국가로 이동할 수 있다. 통관은 체코 내 주요도시의 관세청을 통하여 할 수 있는데 수입신고는 수입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청에 등록된 통관업체를 통하여 가능하며, 모든 서류가 구비되어 있을 경우 실제 통관수속에는 1-2일 정도가 소요된다. EU 공통관세율에 의한 관세와 유류, 주류 및 담배 등에 부과되는 소비세(Excise Tax), 부가세(19%)는 통관 시 지불하여야 한다.

1) 통관절차

수입신고 -> 심사 -> 물품검사 -> 관세 등 제세납부

2) 구비서류

수입통관 시에는 수입신고서, B/L,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원산지증명서, Packing List, Customs Cargo Release Form, Customs transit document, Terminal charges receipt가 구비되어야 하며,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의 경우에는 수입 라이센스, 산 동물이나 육류 등에는 검역증명서, 식품과 과일의 경우에는 식물병리학 증명서등이 첨부되어야 한다. 수입 신고서에는 반드시 상품의 관세분류번호(TARIC Code: EU 관세분류번호)가 기재되어야 한다. 품목별 수입관련정보는 www.europa.eu.int/comm/taxation_customs/dds/en/tarhome.htm에서 확인가능하다.

3) 물품검사

세관의 조사는 통관서류 검사, 물품확인, 수입자 조회 등으로 이루어진다.

나. 운송

1) 국제공항

체코의 국제공항은 프라하, 브르노, 오스트라바, 카를로비 바리의 4개 도시에 있다. 이중 이용객이 가장 많은 프라하의 국제 공항은 Ruzyne로 시내에서 자동차로 30분 정도 소요된다. 프라하 국제공항에는 2004년 5월 15일부터 대한항공이 한국과 체코간 직항노선을 운항을 시작하였으며 현재 주 4회(월,화,목,토) 운항하고 있어 한국으로부터의 항공화물은 프라하 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2) 항구

체코는 내륙 국가로 국제 항구가 없으므로 주로 서유럽의 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함부르크 항구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들 항구와 체코간에는 도로 및 철도를 이용하고 있다.

3) 운송비용

상품운송의 경우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함부르크를 통할 경우 20피트 컨테이너에 약 1,820달러(해상운임 약 1,200달러, 육상운임 약 620달러), 40피트 컨테이너는 약 3,250달러(해상운임 약 2,400달러, 육상운임 약 850달러)가 소요된다(2007.12월 현재)

다. 주요 운송회사

JAS Forwarding(Czech)			
ADD	Luuna 716/2, 160 00 Praha 6		
TEL	+420 220 105 722	FAX	+420 220 105 723
WEB	www.jasczech.cz		
E-Mail	general@jasczech.com		
Care & Go			
ADD	Velenka 89, 289 12 Sadska		
TEL	+420 325 598 150	FAX	+420 325 568 315
WEB	www.careandgo.com		
E-Mail	info@careandgo.com		
CSKD INTRANS			
ADD	Jana Zelivskeho 2, 130 00 Praha 3		
TEL	+420 220 193 522	FAX	+420 220 193 544
WEB	www.intrans.cz		
E-Mail	Lukas.Bernard@xxx.cz		
ARGO Trans			
ADD	Sokolska 33, 771 01 Olomouc		
TEL	+420 585 209 011		
FAX	+420 585 209 012		
WEB	www.argogroup.cz		
E-Mail	argotrans@argotrans.cz		
ADD	J.S. Baara 838, 405 02 Decin		
TEL	+420 412 709 315		
FAX	+420 412 709 320		
WEB	www.selectra.czㄷ		
E-Mail	selectra@selectra.cz		
Speed Star			
ADD	K Letisti 57/1049, 161 00 Praha 6		
TEL	+420 220 115 410	FAX	+420 220 115 411
WEB	www.speedstar.cz		
E-Mail	speedstar@speedstar.cz		

8. 대한수입규제 동향

□ EU의 대한 수입규제 내역

2007.12.10일 기준

○ 총 5개 품목이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으며 이중 한 품목(철강제관 연결구류)은 반덤핑 재심 조사 중이다.

○ 또한 1개 품목(DRAM)에 대해 상계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EU의 對韓 수입규제 현황

품목	HS코드	유형	조사개시	최종판정	비고
폴리에스테르 단섬유(PSF)	5503.20	반덤핑	1999.10.7	2000.12.28	- 05.5.27, 향후 5년간 지속 결정 - 휴비스 5.7%, 새한 10.6%, 동우, 이스 트영, 에스탈, 금풍, 건백, 삼흥각 6%, 기타업체 10.6%
PET칩	3907.6020, ex3907.6080	반덤핑	99.11.6	00.11.30	- 05.12.1 재심 개시 - 07.2.27 확정관세 부과 결정 - SK케미컬, 휴비스, 호남석유화학, KP케미컬 무세, 기타 업체는 148.3유로/t
양문형냉장고	8418.1091	반덤핑	05.6.2	06.9.1	- 대우 3.4%, LG 12.2%, 삼성 무세 - 삼문형은 제외
실리콘	2804.69	중국산 우회덤핑	06.4.21	07.1.19	- 우회덤핑이 아닌 경우 적정 서류를 EU 측에 제출키로 함 - 09.3.5일부로 종료예정
철강제관 연결구류	ex73079311, ex73079319, ex7307.9930 ex7307.9990	반덤핑	01.6.1	02.8.25	- 반덤핑 확정관세율 44% - 07.8.1일부로 재심 조사중
DRAM	8542.2111, 8542.2113, 8542.2115, 8542.2117, 8542.2101, 8542.2105 8548.9010, ex8473.3919 ex8473.5010	상계관세	02.7	03.8	- 상계관세율 32.9%

Ⅳ. 투자

1. 투자환경

□ 유럽의 정중앙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

○ 독일 및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면서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지리적으로 서유럽에 가장 근접하고 유럽의 중앙에 위치하여 물류에 유리

○ 2004년 EU 가입으로 거대 EU 시장에 직접 접근 가능

유럽 주요 도시와의 거리

(단위: km)

구 분	베를린	파리	로마	암스텔담	마드리드	함부르크	모스크바
바르샤바	560	1,569	1,715	1,208	2,783	842	1,245
프라하	336	1,002	1,210	830	2,168	587	1,856
부다페스트	818	1,422	1,142	1,340	2,379	1,096	1,852
브라티슬라바	638	1,244	1,093	1,158	2,321	915	1,881

자료원: ViaMichelin, "Driving Directions"

□ 잘 갖추어진 인프라

○ 2007년 경제 자유도 지수 세계 31위로 중동부 유럽 국가 중 최고 수준

○ 철도 연장이 9,614㎞에 달할 정도로 유럽 국가 중 가장 조밀한 철도망

○ 2005년 기준 고속도로 연장 564㎞의 중동부 유럽에서 최고의 고속도로 망을 갖추고 있으며, 2009년말까지 256㎞에 달하는 신규 고속도로가 건설 완료될 예정

교통 인프라 밀집도

(단위: ㎞/100㎢)

구 분	체코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고속도로	0.6	0.2	0.1	0.6	0.1	1.6
일반도로	161.4	32.0	118.8	35.6	136.2	73.6
철 도	12.0	8.2	7.3	7.5	2.7	3.0
내륙수로	0.8	1.5	1.2	0.4	0.0	0.0

자료원: CzechInvest, Transport Infrastructure(2007.12월 최신자료)

□ 우수한 인적자원

○ 문맹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우며(세계 최고 수준), 유럽에서 고등교육 인구비율이 가장 높으며 풍부한 외국어 구사 인력 보유

○ 유럽 내 핵심 산업국가로서의 오랜 역사에 따라 풍부한 기능인력 보유

○ 2004년 OECD 보고서는 체코가 과학 및 기술분야 대학졸업생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

EU 주요 국가별 외국어 대화가능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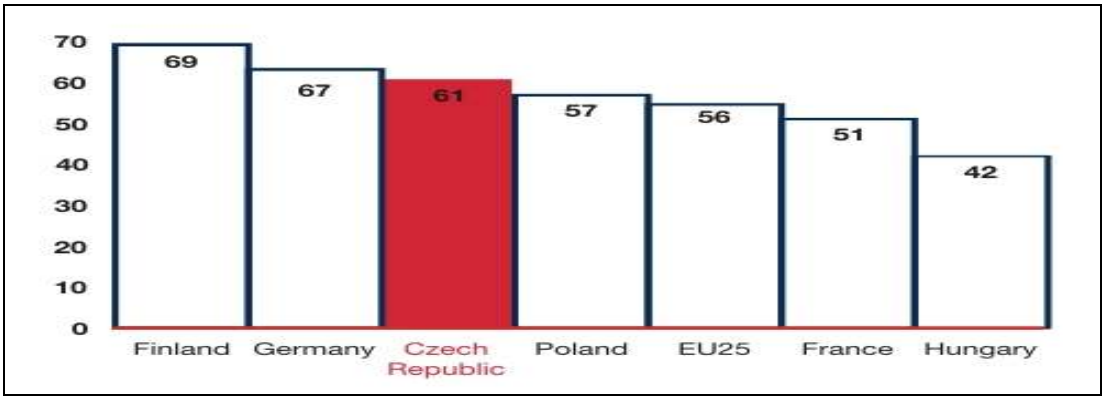

자료원: EC, Eurobarometer (2006)

□ 우수한 국내 산업기반

전통적인 유럽의 공업국으로 부품, 기계 등 기초 산업 기반이 우수하여 현지 부품 조달에 유리

□ 선진국 수준의 생활 여건

구 공산권 국가 중 슬로베니아에 이어 가장 높은 소득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유럽 주요 도시에 버금가는 생활 여건

2. 외국기업 투자동향

가.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

체코는 자유화 이후 외국인투자에 대하여 별다른 특혜제도를 시행하지 않아 슬로바키아와 분리된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유입된 외국인직접투자 누계액이 68억 달러에 불과했을 정도로 인근 헝가리나 폴란드에 비해 외국인투자유치가 상대적으로 저조하였으나, 1998년 5월 투자 인센티브법 도입 이후 1999년 한 해에만 1997년까지의 누계액과 맞먹는 63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가 유입되는 등 외국인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2년에는 현지화 기준 사상 최대인 85억 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한 데 이어 2005년에도 국영통신회사인 Cesky Telecom 등의 매각에 힘입어 달러화 기준 사상 최대인 117억 달러가 유입되는 등 2000년대 들어 중동부 유럽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여 2006년 말 기준 외국인 직접투자 누계는 775억 달러에 달하여 1인당 유치액에서 7,320달러로 중동부유럽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체코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전체 산업생산의 58.6%와 수출의 75.2%를 점유하고 있다. 국가별로는 네덜란드와 독일 양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전체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서유럽 국가의 투자가 92%를 점유하고 있을 정도로 서유럽 기업들의 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본의 체코진출이 두드러지고 있다. 1996년에 마쓰시타가 프라하 서남부에 위치한 플젠에 TV 생산 공장을 설립하면서 시작된 일본의 대 체코 투자는 체코의 EU 가입을 전후하여 급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3년도에는 투자금액이 전체 외국인 투자의 4위를 기록하는 등 2006년 말 기준 일본의 대 체코 직접투자 누계액의 69%가 2002년 이후 집중 투자되었다.

국별 외국인 직접 투자

(단위: US$ 백만)

국 명	2004	2005	2006	2007.1-9월	2007년 9월말누계
네덜란드	2,002	920	661	2,491	20,534
독 일	758	1,619	1,158	-216	13,286
오스트리아	439	625	837	659	8,226
프랑스	-176	387	271	256	4,253
룩셈부르크	554	158	1,289	1,060	3,966
스페인	68	5,229	-99	383	3,913
미 국	505	114	243	332	3,433
영 국	19	58	525	275	2,728
벨기에	-52	234	-69	425	2,531
스위스	184	85	84	156	1,548
일 본	39	63	118	83	1,048
한 국	-0.4	300	118	322	776
총 계	4,974	11,658	5,957	5,672	81,915

자료원: 체코 중앙은행(2007. 12월 최신자료)

일본의 투자는 제조업에 집중되어 있어 제조업분야에서는 독일에 이어 체코에 대한 2위의 투자국가로 특히 2003년 Toyota가 PSA Peugeot Citroen과 합작으로 체코에 자동차 생산 공장 설립을 결정하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중심으로 진출러시를 보여 2007년 12월 기준 약 70개의 제조업체를 포함하여 200개 이상의 업체가 진출하여 있다. 2002년부터는 체코가 헝가리를 제치고 일본기업들의 중동부 유럽 내 최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였다. 체코의 자유화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는 금융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왔으나 EU 가입이 확실시된 2000년대 들어 유럽 내 생산기지 구축을 위한 제조업분야에 외국인 투자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산업별 외국인투자 동향

(단위: US$ 백만)

구 분	2004	2005	2006	2007.1-9월
제 조 업	1,012	925	2,189	1,899
- 기계/장비	-39	8	952	444
- 기초 금속/금속제품	505	71	389	417
- 정유.화학	266	349	554	498
- 식품/담배	8	114	110	222
- 비금속광물 제품	1	230	4	208
- 기타 제조업	271	153	180	110
금 융 업	764	2,261	853	1,664
무역/호텔/식당	739	359	1,128	153
운송/통신	270	5,776	-112	77
부동산	1,644	2,163	1,955	1,482
전기/가스/수도	290	429	-247	-50
기 타	255	-254	191	447
총 계	4,974	11,658	5,957	5,672

자료원: 체코중앙은행(2007. 12월 최신자료)

나. 주요 외국 투자기업

부 문	업체명	국가	투자규모(US$백만)
Technology Center	Panansonic	일본	7.19
	Honeywell	미국/독일	1.54
	Mercedes Benz Engineering	독일	3.12
	Rieter	스위스	3.70
	Valeo	프랑스	1.73
	Ingersoll Rand	미국	15.55
	Bang & Olufsen	덴마크	2.50
Business Support Service	DHL	독일	190.25
	Accenture	미국	10.41
	IBM	미국	8.28
	Exxon Mobil	미국	33.75
	Siemens	독일	1.39
Electronics	Panasonic	일본	235.19
	Siemens	독일	27.74
	Foxconn	대만	79.28
	TYCO Electronics	미국	35.50
	Celestica	캐나다	10.30
Hi-Tech Engineering	ABB	스웨덴/스위스	1.17
	Parker Hannifin	미국	34.05
	Ingersoll Rand	미국	55.24
	Siemens	독일	18.77
	Honeywell	미국	12.56
	Daikin	일본	244.72
Life Science & Healthcare	Baxter	미국	56.34
	Lonza	스위스	81.89
	Arrow	미국	26.88
	Molnycke	스웨덴	11.17
	Kimberly-Clark	미국	79.54
Automotive	Volkswagen	독일	846.96
	Toyota/PSA	일본/프랑스	850.20
	Robert Bosch	독일	363.09
	Denso	일본	254.53
	TRW Automotive	미국	17.40
	Nemak	멕시코	317.15
	Continental	독일	99.40
	Faurecia	프랑스	166.17
	Valeo	프랑스	50.85

자료원: CzechInvest(2007.12월 최신자료)

3.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우리나라의 대 체코 투자 동향

□ 2005년부터 투자 본격화

한국의 대 체코 투자는 2007년 9월 말 현재 투자건수 25건에 4억 9367만 달러에 불과하여 중동부 유럽 인접국인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에 비하여 극히 미약한 실정으로 200개 이상의 업체가 진출해 있는 일본이나 컴퓨터 및 TV 업종을 중심으로 30개 이상의 제조업체가 진출해 있는 대만에 비해 크게 부진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체코에 대한 제조업 투자로는 대우자동차가 1995년 8월 프라하 소재 체코의 트럭 생산업체 Avia사를 50.2%의 지분 참여형식으로 인수한 Dawoo Avia가 처음이나 대우사태의 영향으로 동 사는 2004년 12월에 미국의 투자회사인 Odien Capital Partners에 매각되었다.

그 밖에는 LG 전자가 Philips와 50:50 비율로 합작 투자한 TV용 CRT 생산업체인 LG-Philips Display가 체코 동부의 Hranice에 있는데, 동사는 Philips가 자체적으로 1999년에 체코에 CRT 공장 투자를 결정하였으나 2001년 LG와 Philips의 CRT 부문이 합작하여 LG-Philips Display를 설립함으로써 LG 전자와 자연스럽게 합작이 된 것으로 최근 브라운관 TV의 사양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다가 네덜란드 모회사의 부도로 현재는 청산작업 중으로 공장은 네덜란드의 CTP Invest에 2007년 2월 22일 매각되었다.

실질적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체코투자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5년으로 9월에 성우하이텍이 체코 동북부의 오스트라바(Ostrava) 지역에 그 해 체코에 대한 외국기업의 제조업투자로는 2번째 규모인 약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여 자동차 차체 공장을 건설하면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6년 5월에는 현대자동차가 오스트라바 인근에 10억 유로를 투자하여 연산 30만대 규모의 자동차 공장을 건설키로 하고 2007년 4월 25일 기공식을 거행함에 따라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관련 업체들의 동반 진출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우리기업의 본격적인 투자진출 영향으로 2007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체코에 대한 투자신고 규모는 42건에 11억 6360만 달러에 달해 신고기준으로는 중동부유럽 국가 중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이며 우리나라의 20대 투자대상국으로 부상하는 등 유럽의 주요 투자대상지로 급부상하고 있다.

연도별 대 체코 투자현황

(단위: US$천, 건)

연 도	신 고			투 자	
	건 수	신규법인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3	1	1	1,000	1	1,000
1994	3	3	10,230	2	3,040
1995	-	-	-	2	304
1996	-	-	-	1	5,600
1998	3	1	28,500	3	28,500
2003	1	1	5,470	1	5,470
2005	4	2	10,600	9	10,100
2006	17	7	1,043,322	21	111,755
2007(1-9월)	13	10	64,480	26	327,900
누 계	**42**	**25**	**1,163,601**	**66**	**493,66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2007. 12월 최신자료)

□ 북부 모라비아지역에 투자 집중

우리나라의 대 체코 투자는 이전의 대우 AVIA나 LG-Philips를 제외하고는 판매법인을 중심으로 프라하 인근에 집중되어 왔으나, 성우하이텍과 현대자동차의 진출을 계기로 2005년부터는 오스트라바 (Ostrava)시를 중심으로 한 체코 동북부의 북부 모라비아지역에 우리기업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슬로바키아 서북부의 질리나(Zilina)에 연산 30만대 규모의 공장을 갖추고 있는 기아자동차와 가까운 위치에 있는 오스트라바 인근의 노소비체(Nosovice)에 공장을 건설하여 체코 동북부와 슬로바키아 서북부를 잇는 유럽 내 자동차 생산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어 현대자동차 협력업체들을 중심으로 북부 모라비아지역에 대한 투자가 집중되고 있으며, 관련업체의 진출도 활기를 띠고 있다.

향후 우리나라 기업의 대 체코투자는 자동차 및 연관업종이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기업이 체코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갈 경우 (지금까지 투자 사례도 미미했지만) 우리기업들이 특별한 성공사례를 남기지 못했던 체코가 투자대상지로서 인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업종별 대 체코 투자

(단위: US$천, 건)

업 종	신 고			투 자	
	건 수	신규법인수	금 액	건 수	금 액
제조업	33	18	1,148,436	54	478,954
도소매업	5	4	9,920	7	9,874
운수창고업	3	2	4,745	4	4,745
숙박음식점업	1	1	500	1	95
누 계	**42**	**25**	**1,163,601**	**66**	**493,668**

주: 2007. 9월 말 누계 기준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2007. 12월 최신자료)

나. 우리 주요 투자기업

회사명	모기업	업종	투자진출시기
Kia Motors Czech s.r.o.	기아자동차	도소매업(자동차)	1993.8
LG Electronics CZ s.r.o.	LG 전자	도소매업(전자)	2003.9
SungWoo Hitech s.r.o.	성우하이텍	제조업(자동차부품)	2005.9
Plakor Czech s.r.o.	플라코	제조업(자동차부품)	2006.6
Hyundai Motor Manufacturing Czech s.r.o.	현대자동차	제조업(자동차)	2006.7
Sejong Czech s.r.o.	세종산업	제조업(자동차부품)	2006.10
Dymos Czech Republic s.r.o.	다이모스	제조업(자동차부품)	2006.12
Mobis Automotive Czech s.r.o.	모비스	제조업(자동차부품)	2006.12
KOS Wire Europe s.r.o.	고려상사	제조업(강선)	2006.12
Donghee Czech s.r.o.	동희산업	제조업(자동차부품)	2007.2
Matador-dongwon CZ, s.r.o.	동원금속	제조업(자동차부품)	2007.4
Hysco Czech s.r.o.	하이스코	제조업(철강)	2007.5

자료원: 프라하무역관 자체조사(2007.12월 최신자료)

4. 주요 투자법 내용

가.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체코는 자유화 이후 다양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노력을 기울여 온 폴란드나 헝가리와는 달리 자유화 이후에도 외국인투자에 국내 상법을 그대로 적용하고 별다른 특혜제도를 시행하지 않다가 1998년 4월 처음으로 “투자인센티브법”을 도입하였다.

2000년 5월에는 투자인센티브 수혜를 위한 최소 투자액 규모 하향조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신투자인센티브법”을 제정하였으며, 2002년 초에는 인센티브 대상 투자를 서비스분야까지 확대하였다.

2004년 5월부터는 EU 가입에 따라 EU 집행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동 법을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07년부터 EU 규정이 변경됨에 따라 “투자인센티브법”을 개정하여 2007년 7월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나. 투자 장려 분야

체코 정부는 체코가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산업 등 주요 산업부문 및 하이테크 산업과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에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중점을 두고 있다.

○ 체코 주요 중점 산업 분야
- Electronics
- Precision Engineering and Automobile Industry
- Chemicals and Plastics

○ High-tech 산업
- Microelectronics and Semiconductors
- Biotechnology and Pharmaceutics
- Optoelectronics

○ High-tech 서비스 분야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Software Development
- Strategic Service : Shared Service Centers, Expert and Solution Provider Center
- High-Tech Repair Centers

다. 외국인 투자 제한

체코는 기업 인수이든 신규 법인 설립이든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산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정부의 별도 승인 등 어떠한 제한도 두고 있지 않으며 체코 국내 기업과 동일한 조건 하에서 사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또한 일부 분야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투자액의 규모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체코 내 외국인 투자 기업 설립에 대해서는 상법에 의하여 회사 등록 절차를 마치면 된다. 그러나 군수산업 및 금융업 등에 대한 투자의 경우 재무부 및 관련 부처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송 미디어의 경우 공중파 방송은 방송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케이블 및 위성 방송은 등록 절차만 필하도록 되어 있다.

금융 부문에 대한 투자의 경우 체코 중앙 은행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에는 통상 30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신설 은행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CZK 5억이며, 체코 내 법인이 은행 지분의 10% 이상을 취득 시에는 중앙 은행의 승인이 필요하다. 부동산의 경우 토지 소유가 외국인 개인에게는 허용되지 않으며, 지사나 현지법인 명의로만 부동산을 취득 할 수 있다.

체코의 외환 관리 규정에 따르면 투자 지분에 대한 정부의 허가는 요구되지 않으며, 투자 지분에 대한 대정부 보고 의무도 면제되고 있다. 투자 지분의 해외 외국환 은행 예치도 허용되며 과실 송금 또한 자유롭다.

라. 외국인 투자 보호

체코는 1995년 12월 구 공산권 국가로는 처음으로 OECD(경제개발 협력 기구) 회원국이 되면서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내외국인 투자가들에 대한 동등 대우 및 특별 투자 인센티브 제한 등에 대한 OECD 기준을 준수하기로 동의한 바 있다. 이외에 체코는 MIGA (Multilateral Investment Guarantee Agency)의 회원국이며, 국가별로 상호 투자 보호 조약을 체결한 국가 들에 대해서는 이에 따라 투자가 보호된다.

마. 투자허가

기업인수든 신규 법인 설립이든 국방 및 안보와 관련된 산업과 금융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투자 시 체코정부의 사전허가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따라서 체코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체코기업과 동일한 기업설립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러나 투자에 따른 체코정부의 투자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전에 체코투자청(CzechInvest)에 인센티브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절차는 투자대상 산업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바. 투자 인센티브제도

1) 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 **인센티브 지급제외 대상 산업**

○ 철강산업
○ 인조섬유(Synthetic fiber) 제조업

□ **인센티브의 종류**

○ 법인세 감면
- 신규 투자기업에 최장 5년간 법인세 면제
- 기존 기업의 추가 투자에 대하여 최장 5년간 법인세 부분 감면

○ 고용창출 보조금(Job-Creation Grants)
-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A 지역)에 투자할 경우 종업원 1인당 CZK 200,000 지원

○ 교육 및 재교육(Training and Re-training) 보조금
-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A 지역)에 투자할 경우 종업원 1인당 교육 및 재교육 비용의 최대 35% 지원(중소기업은 최대 45% 까지)

* 고용창출 보조금과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은 노동부와 협약에 의하여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은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음

○ 공장부지 지원
- 중앙 또는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를 공장 건설 부지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급

□ **인센티브 수혜 조건**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서는 우선 생산 시설이 체코의 환경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며, 투자 지역에 따른 최소 투자액 등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공통적인 인센티브 수혜조건은 다음과 같다.
- 신규 생산시설의 건립 또는 현 생산시설의 확장을 위한 투자여야 함
- 최소투자 규모는 지역별 실업률에 따라 A지역의 경우 CZK 5천만, B지역 CZK 6천만, C지역 CZK 1억 이상
- 최소투자금액의 50%는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함
- 총 투자금액의 최소 60%를 기계설비(신품이어야 함)에 투자해야 함
- 인센티브 수혜조건은 인센티브 공여일로부터 3년 내에 충족되어야 함
- 체코투자청(CzechInvest)로부터 프로젝트등록확인서(Confirmation of Project Registration)를 발급받기 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 인센티브 수혜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투자를 유지해야 함
- 고용창출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보조금을 처음 신청한 날로부터 최소 5년간 신규 창출된 종업원 수를 유지해야 함
- 생산시설은 환경친화적이어야 함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조건

	A지역	B지역	C지역
최소투자액(CZK 백만)	50	60	100
최소 자기자본(CZK 백만)	25	30	50

주: A지역: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소 50% 이상 높은 지역, B지역: 실업률이 전국 평균보다 최소 25% 이상 높은 지역, 3. 기타 지역

주: 동 지역구분은 2007년 말까지 유효

□ **인센티브 수혜 한도**

인센티브(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제외) 총액은 EU 규정에 의한 정부보조금 한도 내에서 제공 가능하며 최대 수혜한도는 지역별로 유효 투자비의 0~40%로 차이가 있다.

투자금액이 5천만 유로 이하일 경우 소기업(종업원 50명 미만, 자산 및 연매출액 1천만 유로 이하)은 지역별 최대 수혜한도보다 20%, 중견기업(종업원 250명 미만, 자산 4,300만 유로 이하, 연 매출액 5천만 유로 이하)의 경우 10%를 증액하여 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이 5천만 유로를 초과하는 투자의 경우 전체 투자 중 5천만 유로- 1억 유로에 대해서는 최대 수혜한도의 50%, 1억 유로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 수혜한도의 34%가 적용된다.

EU 산업분류(NACE) 기준 화학 및 제약산업(DG), 기계장비 제조업(DK), 전기광학장비 제조업(DL), 운송기기 제조업(DM)에 속하지 않는 산업에 대한 투자인센티브는 지역별 수혜한도의 75%가 적용된다.

Maximum state aid intensity according to NACE specification of industry	
100 % of maximum state aid	***75 % of maximum state aid intensity***
DG - Chemical and pharmaceutical	**DA** - Food and tobacco **DB, DC** - Textile, clothing and leather **DD** - Wood-processing
DK - Manufacture of machinery and equipment	**DE** - Paper and printing, publishing activities
DL - Manufacture of electrical and optical equipment	**DF** - Manufacture of coke, refining of petroleum, manufacture of nuclear fuel, radioactive elements and compounds **DH** - Rubber and plastic
DM - Manufacture of transport equipment	**DI** - Glass ceramics, porcelain and building material **DJ** - Manufacture of metals **DN** - Other industries

Region	State aid	Supplement
Prague	0-10 % (2007-08)	
South-west	36 % (2007-10) 30 % (2011-13)	
Other regions	40%	

○ 인센티브 신청 절차
- CzechInvest 에 투자인센티브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CzechInvest 에서 1 개월 이내 서류 검토 후 산업무역부에 제출
- 산업 무역부에서 관련부처의 의견을 취합하여 2 개월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 형태 및 규모를 포함한 “투자인센티브 지원 제안서(Offer of Investment Incentives)” 발급
- 투자자는 산업무역부의 제안서에 대한 동의여부를 6 개월 이내에 회신
- 산업무역부에서 투자자의 동의를 CzechInvest 를 통하여 받은 후 1 개월 이내에 “투자 인센티브 지원 결정서(Decision to Grant Investment Incentives)” 발급

2) Technology Centers & Business Support Services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 수혜대상 투자분야

○ Technology Centers
- 하기의 산업분야에 관련된 하이테크 제품 및 생산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로 생산 시설에 대한 투자는 해당되지 않음
- Aerospace
- Computers and office machines
- Electronics and microelectronics
- Telecommunications
- Pharmaceuticals
- Automotive
- Electronic machines
- Chemical products

○ 기업지원서비스(Business Support Services)
- Customer Contact Centers: 콜센터, 기술지원 등 고객 지원센터
- Shared Services Centers: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재무, 마케팅, 홍보, IT 등 일반 업무 분야의 아웃소싱 센터
- ICT Expert Solution Centers: IT 시스템 및 통신망 운영 등 아웃소싱 센터
- Software Development Centers: 외국기업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 High-Tech Repair Centers: 컴퓨터, 전기·전자 제품, 의료기기, 정밀기기, 광학기기, 항공기 등의 A/S 센터

□ 인센티브

○ 영업활동 보조금(Subsidy)
- 연속 2년간 신규 고용한 근로자의 2년간 평균임금(사회보장세 기업부담금 포함)에 대하여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0-40%)내에서 보조금 지급
- 지역별 인센티브 수혜한도는 제조업과 동일

○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 교육 및 재교육에 소요된 비용의 35%(프라하는 30%) 지원
  . 신규 고용 창출 100명 미만: 3년간 교육비용의 35%
  . 신규 고용 창출 100명 이상(Customer Contact Centres는 150명 이상): 5년간 교육 비용의 35%
  * 중소기업은 10% 상향 조정

□ 인센티브 수혜조건

일반 조건

최소 투자규모	CZK 1천만(EUR 0.36백만, US$ 0.48백만
최소 신규 고용창출(명)	
- Software Development Centres	20
- Expert Solution Centres	30
- Technology Centres	50
- High-Tech Repair Centres	
- Shared Services Centres	100
- Call-Centres	

○ 기타 조건

- 상기 조건을 "프로젝트지원 결정서(Project Aid Decision)" 획득 후 3년 이내에 충족해야 함
- 투자규모 및 일자리를 5년간 유지
- 체코 투자청(CzechInvest)로부터 "프로젝트 등록확인서(Confirmation of Project Registration)"을 발급받기 전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야 함
- Business Support Services는 국제적인 프로젝트여야 함

○ 인센티브 신청절차

- CzechInvest 에 투자인센티브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 후 CzechInvest 에서 60 일 이내 서류 검토
- 신청서 검토 후 CzechInvest 에서 산업무역부에 프로젝트 평가서를 송부하며, 산업 무역부에서는 동 서류 접수 후 7 일 이내에 관련부처에 검토 요청
- 관련부처에서 30 일 이내에 산업무역부에 의견 회신
- 산업무역부는 관련부처 의견 접수 7 일 이내에 인센티브 지원형태 및 규모를 포함한 "프로젝트 지원안(Draft Project Support Decision)" 준비
- 투자자는 산업무역부의 지원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6 개월 이내에 회신
- 산업무역부에서 투자자 동의서 접수 후 "프로젝트 지원결정서(Project Support Decision)" 발급

3) 신규 고용창출 인센티브

□ 지원대상 투자

○ 실업률이 체코 평균보다 50% 이상 높은 지역에 대한 투자에만 해당되며 제조업, Customer Support Centers(Call Centers 등), Shared Service Centers 에 대한 신규 투자 및 추가 투자의 경우 신규 고용 창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 2007 말까지 동 인센티브가 적용되는 지역은 Decin, Usti nad Labem, Teplice, Most, Chomutov, Louny, Jesenik, Bruntal, Karvina, Ostrava, Znojmo, Hodonin 의 12 개 지역임

□ 인센티브

○ 고용 보조금

- 신규 고용 종업원 1인 당 최대 CZK 20만까지 보조금 지원
- 최대 지원한도는 신규 고용된 종업원 2년간 급여의 40%를 초과할 수 없음

○ 교육 및 재교육 보조금

- 교육비의 35%까지 보조금 지급
- 지급한도는 신규고용 종업원 1인 당 최대 CZK 3만

□ 인센티브 수혜 조건

○ 최소 투자액: CZK 1 천만(리스를 제외한 유, 무형 고정자산 기준)

○ 최소 신규 고용창출: 10 명

○ 최소 자기 자본액: CZK 5 백만

○ 인센티브 지원협약이 체결된 후 2 년 내에 상기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지원조건을 충족한 날로부터 최소 3 년간 투자규모 및 신규 고용창출 인원을 유지하여야 함

○ 투자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유형고장자산의 최초 소유주여야 함(즉, 중고기계는 인센티브 대상투자에 포함되지 않음)

○ 생산시설은 환경친화적이어야 함

5. 진출형태별 절차

가. 진출 형태

외국 기업은 체코 내에 지사 또는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체코 기업과 동등하게 체코 내에서 영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체코에서 법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형태는 4가지 유형이 있으나 이 중 외국 기업이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형태는 주식회사(a.s. Joint-Stock Company) 와 유한책임 회사(s.r.o.: Limited Liability Company)이며, 주식회사의 경우 프라하 주식 시장에 상장할 수 있다.

1) 지사(Branch Office)

외국 기업의 지사는 체코의 법인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외국 기업을 대신하여 체코 내에서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 회사 설립, 합작 투자, 기존 기업 인수 및 판매 등 모든 상업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 기업 설립 근거 규정이 지사 내부 활동에도 적용된다. 지사는 영업 지사와 비영업 지사의 두 가지 종류로 등록할 수 있으며, 설립 절차는 동일하나 세금 적용에 차이가 있다. 2002년 1월부터 지사도 체코 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지사 개설을 희망하는 외국 기업은 지사 설치 신청서에 지사의 향후 활동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상업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사장은 체코인 이나 체코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체류 허가를 갖고 있는 외국인을 임명할 수 있다.

<u>상업 등기소에 등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u>

○ 지사의 향후 활동 내역 및 최초 지사장을 명기한 체코 내 지사 설립을 승인한 본사 이사회 등의 공증된 결정문

○ 영업 내용이 명기된 공증된 사업자 등록증 등 본사 설립 근거 서류

○ 체코 영업허가소(Trade License Office)에서 발행된 영업허가서

○ 지사장의 공인 사인 증명서

○ 지사장에 대한 본국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무 범죄증명서

○ 사무실 임대 계약서 및 동 건물의 등기증(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야 함)

2) 현지법인

□ 유한책임회사(s.r.o. Limited Liability Company)

외국 기업이 체코에 가장 많이 설립하는 현지법인 형태로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할 수 있다. 최소 1명 이상의 법정 대표자가 있어야 하며, 최소 등록 자본금은 CZK 20만이다. 법정 대표 자는 회사를 대표하며 외국인의 경우 적법한 체코 내 거주 허가가 있어야 한다.

대표자는 1년에 적어도 한번 이상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등록 자본금의 증감, 이윤의 배분, 회사 청산, 이사 선임 등은 주주총회를 거쳐야 한다.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회사 설립자(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법적 근거 서류

○ 공증된 회사 설립 의향서(establishment memorandum)

○ 법정 최소 등록 자본금 은행 입금 증명서

○ 체코 영업 허가소 발행 영업 허가서

○ 법정 대표자의 공인 사인 증명서

○ 법정 대표자의 법률 준수 서약서

○ 법정 대표자에 대한 본국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무 범죄 증명서

○ 사업장 임대 계약서 및 동 건물의 등기증(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야 함)

○ 법정 대표자의 체코 장기 비자 또는 체류 허가증

○ 회사 설립 등록 절차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위임장

□ 주식회사(a.s. Joint-Stock Company)

주로 대기업에 적합한 형태로 최소 등록 자본금은 CZK 2백만이다. 이사회는 최소 3명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사의 임기는 5년을 넘길 수 없고(연임은 가능), 주주총회에서 선출된다. 주주총회는 1년에 한번 이상 개최되어야 하며, 정관의 변경, 등록 자본금의 증감, 결산 승인, 이윤의 배분, 청산, 이사회 및 감사 기구의 선출 등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주총회에서 선출된 최소 3명 이상의 감사 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감사인은 이사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 50명 이상의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감사인의 1/3은 종업원 특히 노동 조합원에서 선출되어야 하며, 감사인의 임기는 5년을 초과할 수 없으나 연임할 수 있다.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공증된 회사 설립 의향서(establishment memorandum)
- ○ 정관(articles of Association)
- ○ 주주총회 의사록
- ○ 법정 최소 등록 자본금 은행 입금 증명서
- ○ 체코 영업 허가소 발행 영업허가서
- ○ 등기 이사들의 공인 사인 증명서
- ○ 등기 이사 및 감사인 들의 법률 준수 서약서
- ○ 등기 이사 및 감사인 들에 대한 본국 및 지난 3년간 연속 3개월 이상 체류한 국가의 무 범죄 증명서
- ○ 사업장 임대 계약서 및 동 건물의 등기증(주거용 건물이 아니어야 함)
- ○ 등기 이사들의 체코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체류 허가증

나. 설립 절차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기 전에 영업 분야별로 영업 허가서를 체코 영업 허가소(Trade License Office)로부터 발급 받아야 한다.

영업 허가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공인된 대표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동 대표자가 기업의 영업 허가 조건 충족에 책임을 진다. 대표자는 허가 별로 지명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복수의 영업 허가에 대하여 대표자가 될 수도 있다. 대표자는 체코인이나 체코 내 장기 체류 비자 또는 체류 허가증을 보유한 외국인이 될 수 있다. 영업 허가서를 발급 받은 후 90일 이내에 지방법원의 상업 등기소에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설립 등기에 소요되는 기간은 종전 3개월이었으나 2005년 7월 1일부터 일주일로 단축되었으며, 인터넷으로도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법인 설립 단계별 절차는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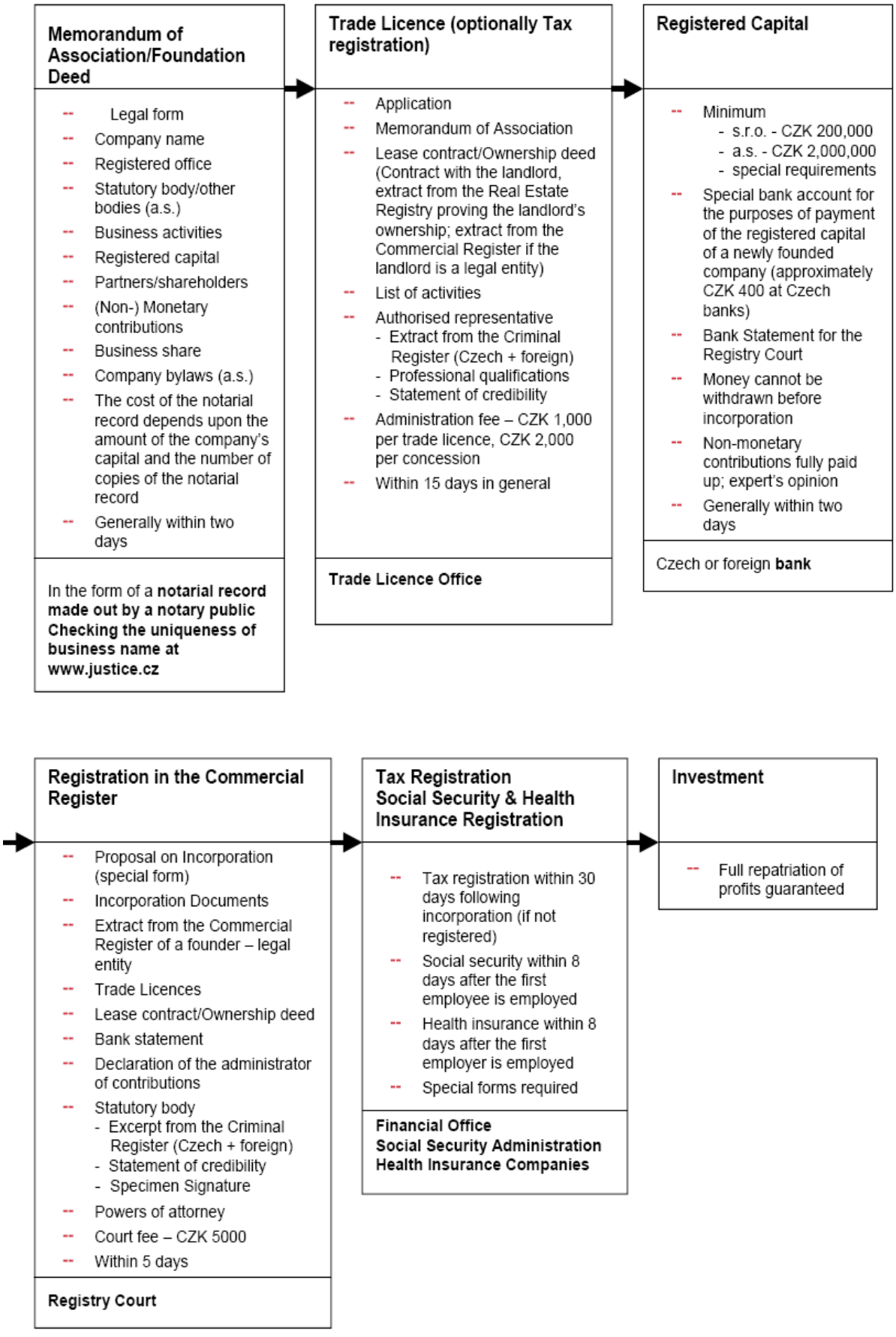

위치 및 크기와 관련한 일련의 변수들을 감안하여 재무부가 결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프라하 및 여타 대도시(인구 10만 명 이상)의 경우 토지가격이 높다. 또한 국가소유 토지 매각 승인은 재무부 담당이다.

구입대상 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상태 등은 각 지방정부의 토지등기소(Land Registry)에서 부동산 등기부등본(Land Register Extract)을 발급 받아 확인할 수 있다. 동 등기부 등본에는 부동산의 소유주, 부동산(토지 및 건물)에 대한 내용, 담보 등 각종 소유권 제한 내용, 거래관계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의 특정 항목 앞에 "P"자가 있을 경우 에는 동 부동산에 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체코에서는 명확한 토지소유권 획득이 쉽지 않은데, 이는 이전 소유권자들과의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공장 부지 매입 시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역 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지방정부의 토지 등기소에 등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법적 거래일은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에 서명한 날이 아니라 등기신청서가 접수된 날이 기준이 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양도도 이날을 기준으로 한다.

매매계약서에는 계약대상 부동산의 내용 및 매매가격이 명기되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나 위임을 받은 사람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등기신청서에 이러한 요건을 갖춘 매매계약서가 첨부 되지 않거나, 계약서상의 선행조건 들이 등기신청 시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등기가 거부된다.

등기신청서를 제출하면 토지 등기소에서 신청서 검토 후 문제가 없을 경우 등기결정서(decision on registration)를 발급한 후 부동산 등기부(Land Register)에 기록하게 된다. 등기신청서 제출 후 등기결정서 발급까지는 통상 30일에서 60일이 소요되나 프라하의 경우 6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도 빈번하다.

2) 공장 건설 허가절차

구획별 정리법(Zoning Law)이 적용되는 지역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신규건축허가 이외에도 보건, 위생, 환기, 하수처리 등에 대한 많은 지역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998년 6월 체코 정부는 건축법을 개정하여 구획정리 및 건축허가 과정을 단순화한 바 있다. 공장설립에는 통상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가 소요되나 이미 토지구획 정리가 되어있고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는 산업단지 내에 설립할 경우에는 시간이 크게 단축된다.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용도허가(Planning Permit), 환경오염방지허가(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건축허가 (Building Permit) 및 준공승인(Final Approval)이 필요하다.

□ 환경영향평가(EIA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환경영향평가는 EU 환경영향평가(EIA)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먼저 평가 필요성 검토로 시작되며 이에는 2개월이 소요된다. 필요성 검토결과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것으로 판명되면 공청회를 포함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되며, 이에는 5-10개월이 소요된다.

□ 용도허가 (Planning Permit)

공장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허가절차로 신청에서 허가까지는 약 1-2개월이 소요된다. 용도허가에는 공장설립 대상 토지에 대한 사용용도 및 투자자 준수사항 등이 명기되며,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2년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 환경오염방지허가(IPPC: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허가로 에너지산업, 야금산업, 화학, 식품 및 일부 원료가공 산업, 제지, 피혁가공, 섬유산업, 석탄산업, 표면처리 산업 등과 같은 환경오염 가능성이 높은 산업에 적용된다. 동 허가에는 산업폐기물 처리에 대한 현재 가능한 최선의 처리시설 설치조건이 부과된다.

□ 건축허가 (Building Permit)

건축 도면 등 건축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한 허가로 허가 절차에 1-2개월이 소요되며, 허가서 유효기간은 2년이나 연장이 가능하다.

□ 준공승인 (Final Approval)

공장 건축이 완료된 이후에 각종 허가조건의 충족여부를 지역 건축허가 부서에서 조사한 후 준공승인서를 발급한다. 준공승인을 득한 후에야 생산에 들어갈 수 있다. 공장설립에 따른 각 절차와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다.

소요 개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대상부지 결정															
부지매입 가계약															
현지법인 설립등기															
현지법인 세무등기															
투자인센티브 신청															
환경영향 평가															
용도허가서류 준비															
용도허가															
환경오염방지허가															
건축허가서류 준비															
건축허가															
부지매입 계약															
공장 건설															
생산설비 설치															
준공승인															
생산개시															
인력채용 및 교육															
투자															

□ 공장 건축비용

공장 건축비용은 공장부지의 위치 및 용도, 사용자재, 기반시설의 유무 등에 따라 커다란 차이가 있으나 대략적인 건축비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비용
도로	900-2,900 CZK/㎡
보도	495-950 CZK/㎡
상수도(직경 400mm 까지)	4,700-15,900 CZK/m
하수도(직경 400mm 까지	5,930-11,200 CZK/m
전력선 연결(22-35kw 고압선)	1,850-5,100 CZK/m
공장건물	4,200-5,000 CZK/㎡
사무동	3,000-6,500 CZK/㎡
부지 정리	120-550 CZK/㎡
조경	200-2,000 CZK/㎡

자료원: CzechInvest, Fact Sheet No.19

6. 투자입지여건

가. 입지선정 시 유의사항

체코 내 공장설립을 위하여 입지를 선정할 때는 대상지역의 제반 인프라뿐 아니라 대상 토지의 법적 문제와 동 지역의 인력확보 용이성도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체코는 자유화 과정에서 공산화 이전의 토지 소유주들이 소유관계를 입증할 경우 소유권을 회복해 주어 왔기 때문에 체코에서는 명확한 토지소유권의 획득이 쉽지 않다. 이는 토지의 현 소유주와 이전 소유주 간의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등기부 등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체코 등 중부유럽 국가들의 경우 직장을 위하여 고향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지 않아, 공장 설립 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투자 대상지역의 실업률 및 가용 노동인력 등 인력확보 용이성이 사전에 검토되어야 한다. 투자 대상지역의 실업률은 투자 시 인센티브 수혜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 주요 지역별 기초정보

지 역	면적(㎢)	인구(천명)	노동력(천명)	실업률(%)	1인당GDP(US$)
체코 전체	78,868	10,287.2	5,199.4	7.1	13,884
Praha	496	1,188.1	645.2	2.8	29,316
Central Bohemia	11,016	1,175.3	592.6	4.5	12,588
South Bohemia	10,057	630.0	319.1	5.1	12,548
Plzen	7,561	554.5	281.7	4.6	13,026
Karlovy Vary	3,314	304.6	159.2	10.2	10,620
Usti	5,335	823.3	420.8	13.7	11,230
Liverec	3,163	430.8	215.3	7.7	11,792
Hradec kralove	4,758	549.6	277.3	5.4	12,097
Pardubice	4,519	507.8	251.3	5.5	11,372
Vysocina	6,925	511.6	253.5	5.3	11,734
South Moravia	7,065	1,132.6	560.3	8.0	12,654
Olomouc	5,159	639.9	318.3	8.2	10,336
Zlin	3,964	589.8	294.7	7.0	11,256
Moravia-Silesia	5,535	1,249.3	610.0	12.0	11,960

주: 2006년 말 기준 / 자료원: 체코 통계청(2007. 12월 최신자료)

다. 산업단지

체코에는 우리의 일반적인 개념에 부합되는 산업공단이 개발되지 않았었으나, 1998년부터 지역 개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산업단지 개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산업단지의 건설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체코 내 대부분의 산업 단지들은 우리나라 개념의 대규모 공단이라기 보다는 지방정부 및 민간 개발업체들이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소규모로 조성한 것이 대부분이다. 체코에는 개발이 이미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산업단지가 200여 개 있으며, 27개의 Science and Technology Park가 설립 또는 건설 중에 있다.

산업단지는 일반지역에 비해 각종 인프라 및 비즈니스 지원시설이 양호하고, 토지의 소유권 관계 등이 정리되어 있어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단지입주를 희망할 경우 사전에 입주대상 단지에 대한 개별적인 특성, 지리적 위치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체코 내 산업단지에 대한 정보는 체코투자청 홈페이지(www.czechinvest.org)나 지역개발 센터(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인 "Regional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www.iriscrr.cz)"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체코의 주요 산업단지

Center of Industrial and Logistics Lovosice					
소재지		Lovosice (체코 서북부)			
부지면적		65ha	조성주체	지자체 85%, 민간 15%	
주요 입주기업		Tris Czech, Tokai Rika, Aoyama, Koswire(한국) 등			
입주 여건		프라하에서 독일 드레스덴으로 가는 D8 고속도로변에 조성된 단지로 교통이 편리하며 현재 6.3ha 정도의 잔여부지에 입주가능			
교통 여건	철도	단지 인근에 European Corridor IV 역 위치			
	공항	프라하 공항에서 80km			
	도로	D8 고속도로 인접			
연락처		DZCL, a.s.			
		주소	Osvoboditelu 3717, 410 02 Lovosice		
		전화	+420 416 532 499	팩스	+420 416 532 487
		홈페이지	www.meulovo.cz/dzcl/html	E-mail	dzcl@seznam.cz
Kadan-Kralovsky vrch Production Zone					
소재지		Kadan(체코 서북부)			
부지면적		8ha	조성주체	민간	
주요 입주기업		-			
입주 여건		독일 국경 인근에 있으며, 현재 20ha 정도의 잔여 부지에 입주 가능. 부지 가격은 s/m당 CZK 230			
교통 여건	철도	1km			
	공항	까를로비바리 공항 37km, 프라하공항 90km			
	도로	고속도로 70km, E442에 인접			
연락처		Spolecnost investicniho rozvoje, a.s.			
		주소	Bozeny Nemcove 1689, 432 01 Kadan		
		전화	+420 474 342 356	팩스	+420 474 343 116
		홈페이지	www.sirhofman.cz	E-mail	reditel@sirhofman.cz

The Triangle Industrial Zone					
소재지		Zatec (체코 서북부)			
부지면적		360ha	조성주체	지자체	
주요 입주기업		IPS Alpha, Hitachi 등			
입주 여건		군용 공항부지에 조성된 단지로 독일 국경에 가까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150ha 정도의 잔여부지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3km			
	공항	프라하공항에서 60km			
	도로	50km			
연락처		Economic Department, Usti Region			
	주소	Velka Hradebni 3118/48, 400 02 Usti nad Labem			
	전화	+420 475 657 107	팩스	+420 475 200 245	
	홈페이지	www.kr-ustecky.cz	E-mail	Sixta.j@kr-ustecky.cz	
Ostrava-Mosnov Airport Industial Zone					
소재지		Ostrava-Mosnov (체코 동북부)			
부지면적		200ha	조성주체	지자체	
주요 입주기업		Behr Group, Cromodora Wheels, Plakor(한국) 등			
입주 여건		오스트라바 공항 인근에 조성된 단지로 현재 대형 투자용 90ha와 일반분양용 25ha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철도와 직접 연결			
	공항	오스트라바 공항 0.1Km			
	도로	R48 자동차 전용도로와 인접, 인근에 D47 고속도로 공사 예정			
연락처		Department of Economic Development, City of Ostrava			
	주소	Prokesovo nam. 8, 729 30 Ostrava			
	전화	+420 599 442 055	팩스	+420 599 442 040	
	홈페이지	www.dynamicregion.cz	E-mail	dadamik@mmo.cz	
Industrial Zone Krnov-Cerveny Dvur					
소재지		Krnov(체코 동북부)			
부지면적		48ha	조성주체	지자체	
주요 입주기업		IVG Colbachini, Maso, S.T.I. RAME, ERDRICH, APEX 등			
입주 여건		폴란드 국경에 인접해 있으며 현재 잔여부지 17ha 정도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4Km			
	공항	오스트라바 공항에서 40km			
	도로	I/57 자동차전용도로에 인접			
연락처		City of Krnov			
	주소	Hlavni namesti c.1, 794 01 Krnov			
	전화	+420 554 697 508	팩스	+420 554 611 112	
	홈페이지	www.krnov.cz	E-mail	skalka@mukrnov.cz	
Industrial Zone of Bystice nad Pernstejnem					
소재지		Bystrice nad Pernstejnem (체코 중동부)			
부지면적		61.5ha	조성주체	지자체	
주요 입주기업		-			
입주 여건		전체 부지 중 25ha 입주 가능			
교통	철도	0.1km			

여건	공항	브르노 공항에서 60km			
	도로	D1 고속도로에서 35km			
연락처		The Town of Bystrice nad Pernstejnem			
	주소	Masarykovo nam. 57, 593 15 Bystrice nad Pernstejnem			
	전화	+420 566 590 311	팩스	+420 566 590 347	
	홈페이지	www.bysticenp.cz	E-mail	posta@bystricenp.cz	
D1 Industrial Park Jihlava					
소재지		Jihlava (체코 중남부)			
부지면적		45ha	조성주체	지자체	
주요 입주기업		Bosch Diesel, Automotive Lighting, Kronospan 등			
입주 여건		프라하와 브르노를 연결하는 D1 고속도로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여건이 우수하며 현재 잔여부지 19ha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2Km			
	공항	브로노공항 93km			
	도로	D1 고속도로 3km			
연락처		Jihlava Municipal Council			
	주소	Musarykovo nam. 1, 586 01 Jihlava			
	전화	+420 567 167 470	팩스		
	홈페이지	www.jihlava.cz	E-mail	rozvoj.mesta@jihlava-city.cz	
Liberec Sever (North) Industrial Zone					
소재지		Liberec (체코 북부)			
부지면적		75ha	조성주체	민간	
주요 입주기업		-			
입주 여건		현재 잔여부지 43ha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2Km			
	공항	프라하 공항 120km			
	도로	D11 고속도로 20km			
연락처		Investorsko Inzenyrska, a.s.			
	주소	Gorkeho 658/15, 460 01 Liberec			
	전화	+420 485 253 333	팩스	+420 485 253 344	
	홈페이지	www.iias.cz	E-mail	ii@iias.cz	
Kutna Hora Industrial Zone					
소재지		Kutna Hora (체코 중부)			
부지면적		114ha	조성주체	민간	
주요 입주기업		-			
입주 여건		현재까지 조성된 36ha 부지에 입주 가능			
교통 여건	철도	5Km			
	공항	프라하에서 70km			
	도로	D1 고속도로 15km			
연락처		Investorsko Inzenyrska, a.s.			
	주소	Gorkeho 658/15, 460 01 Liberec			
	전화	+420 485 253 333	팩스	+420 485 253 344	
	홈페이지	www.iias.cz	E-mail	ii@iias.cz	

주: 2007.12월 현재 신규 입주가능 단지임

7. 노무 관리

가. 노동시장 여건

체코의 임금 수준은 아직 서구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전반적인 생산성은 서구에 비하여 떨어지는 편이다. 비교적 숙련 인력을 구하기가 쉬운 편이나 노동법 등 제반 노동 관련 규정은 공산주의 시절의 영향을 받아 대부분 노동자들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 편이다. 특히 병가의 경우 의사의 처방전만 있으면 무제한 허용토록 되어 있어 일부 지역의 경우 가을의 감자 수확 철이 되면 종업원 대부분이 병가를 내고 나오지 않아 조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기업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스코다 자동차의 경우 10-20명 단위로 팀을 구성, 팀원 중 누가 병가로 쉬는 것에 관계없이 팀 인원수별로 작업량을 할당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체코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취업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동하는 것을 꺼리고 있어, 공장 인근지에서 근로자 채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투자 대상지의 가용 노동력 유무도 입지선정의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용과 관련한 사항은 노동법(Labour Code)에 규정되어 있는데, 체코의 노동법은 1965년 제정된 이후 47번의 부분 개정을 거쳐 2007.1.1일부터 대폭 개정된 "신노동법(New Labour Code)"이 시행되고 있다.

신노동법에는 이전의 노동법에 빠져있던 급여 및 여행경비, 노동안전 문제 등이 추가되었으며, 차별금지조항은 분리되어 별도의 법률(Anti-Discriminatory Act)로 제정되었다.

현재 신노동법은 균형감각을 잃고 노동자 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다는 재계의 비난을 받고 있으며, 체코 정부는 해고와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용이하게 하여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나. 임금

임금수준은 2007년 1-9월 월평균 임금이 CZK 21,119로 중,동구권 국가 중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이며, 급격한 실업률 감소로 명목 임금인상률이 2006년 6.4%, 2007년 1-9월 7.6%를 기록하여 매년 6-9%의 인상률을 보일 정도로 임금이 빠르게 인상되고 있다. 법정 월 최저임금은 2007년에 월 CZK 8,000, 시간당 CZK 48.10이 적용되고 있다.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 고정급이 월평균 임금의 80% 이상 되어야 한다.

임금의 지급시기는 해당월 지급이 원칙이나 최고 익월을 넘길 수 없으며 지급 수단은 체코화 현금으로 하며 별도의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타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연도별 월평균 임금

(단위: CZK, %)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 1-9월
월 평균 명목임금	16,917	18,041	18,992	20,207	21,119
명목임금 인상률	6.6	6.6	5.3	6.4	7.6
실질임금 인상률	6.5	3.7	3.3	3.8	5.3

자료원: 체코 통계청(2007. 12월 최신자료)

다. 고용계약

체코 노동법은 모든 근로자가 고용주와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계약서에는 직무의 성격과 근무장소, 근무 시작일이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이 세가지 중 하나라도 누락될 경우 고용계약서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밖에 고용계약서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내용은 월 급여 및 지급일, 휴가, 종업원의 의무, 경쟁회사 취업금지 조항(퇴직 후 1년을 초과할 수 없음) 및 수습기간(3개월을 초과할 수 없음), 근무시간, 담당업무 등이며 계약기간에 대한 별다른 명시가 없는 한 지속적인 효력을 갖는다.

종업원이 25명을 초과하는 사업장은 적어도 종업원의 4%는 장애인을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체코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1분기 및 3분기 월평균 임금의 1.5배를 부족한 종업원 수만큼 노동사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고용관계에서 일어나는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직원 채용 시 인종, 피부색, 성별, 종교 및 정치적 신념에 따른 차별조치는 금지되며, 외국인의 고용은 고용주가 지역별 노동사무소에 외국인 고용이 불가피한 사유를 제시하여야 하며, 고용허가기간은 통상 1년으로 매년 갱신되어야 한다.

라. 법정 근로시간 및 시간외 근무수당

체코의 법정 근로시간은 종전의 주당 42.5시간에서 2001.1.1일부로 주당 5일 40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광산 등 지하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37.5시간 이며 2교대 근무자는 주당 38.75시간, 3교대 근무자는 주당 37.5시간 이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은 주당 30시간, 일당 6시간이다.

근로시간은 매일 동일한 시간을 일할 경우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기타의 경우에도 1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자가 최소 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한 경우 최소 30분간의 식사 및 휴식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동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 16세 미만의 경우 연속 근로시간이 4.5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교대 근무자의 경우 근무가 끝난 후 다음 근무까지 최소 12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시간외 근무한도는 주당 8시간 및 연간 416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이 중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간외 근무한도는 연간 150시간으로 이를 초과하는 시간외 근무는 종업원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여성의 경우 광산이나 물리적으로 부적합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여성의 야간근무에 대한 제한은 폐지되었다.

시간외 근무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최소 125%를 지급하여야 하며,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근무시간만큼 근무일에 휴가를 주거나 시간당 임금의 200%를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이나 토, 일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간당 임금의 110%를 지급하여야 한다.

마. 휴가

1) 연차휴가

최소 60일을 계속하여 근무한 경우 연간 최소 4주의 유급 연차휴가(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에는 당해년도 근무일에 비례)를 주어야 한다. 종업원이 업무상 또는 퇴직으로 불가피하게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미사용 일수에 대하여 평균 임금에 따른 휴가 수당을 지불하여야 한다.

2) 출산 및 육아휴가

출산휴가는 28주(쌍둥이는 37주)이며, 산모가 원하는 경우 아이가 3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가를 시행할 수 있다. 남자의 경우에도 3년 한도 내에서 육아휴가가 가능하다. 출산 및 육아휴가의 경우 휴가기간 중 급여는 지급되지 않으며, 육아휴가 후 고용주는 근로자를 재고용해야만 한다.

3) 병가

신노동법에 따르면 질병으로 휴가를 실시하는 경우 2007.1.1일부터 첫 14일간은 고용주가 질병 보험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동 조항은 시행이 1년간 연기되어 2007년에는 종전과 같이 질병보험에서 지급된다.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다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4.5배를 상배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미망인에게 CZK 15,000, 자녀 1인당 CZK 25,000, 부모에게 CZK 15,000을 일시불로 지급하여야 한다.

바. 해고

노동법상 고용계약은 합의에 의한 경우, 해고 통보, 즉시 해고, 수습기간 중의 해고, 고용계약의 만료 또는 피고용인의 사망에 의하여 해지될 수 있다. 피고용인이 외국인인 경우 체코 내 거주허가가 취소되거나 추방되는 경우에도 노동계약이 해지된다.

장애인에 대한 고용계약의 해지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고용주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고용계약 만료

고용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의 합의에 의하여 계약 종료일에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주와 피고용인은 서면으로 고용계약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고용인은 피고용인에게 1부를 주어야 하며, 피고용인이 요구하는 경우 동 합의서에 계약해지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2) 해고 통지

고용주나 피고용인은 최소 2달 전(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경우 30일 전)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 통보가 된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는 철회할 수 없다. 이 경우 철회 통지 및 동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의 경우 해고통지 최소 30일 전에 노동조합 또는 종업원협의회(Work Council)와 관할 노동사무소에 사유와 해고계획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용인은 2개월 전에 고용주에게 서면 통보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도 사직을 할 수 있으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 회사 청산 및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 생산제품, 기술, 생산성 향상 또는 조직개편에 따라 잉여인력이 발생하는 경우
- 피고용인이 주어진 업무에 대한 고용주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장기적인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
- 고용주의 정당한 작업 재배치에 피고용인이 응하지 않는 경우

3) 즉시 해고

고용주가 피고용인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피고용인이 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받았거나, 근로규칙을 빈번히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로 제한되며, 이 경우 서면으로 즉시 해고에 대한 사유를 명기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즉시 해고 사유를 인지한 지 1개월 이내에 해당 피고용인을 해고시켜야 하며, 즉시 해고 사유가 처음 발생한 지 1년을 경과하지 않아야 한다.

임신 중이거나 출산휴가 중인 여성근로자와 육아휴가 중인 남녀 근로자에 대해서는 즉시 해고가 불가능하다.

한편, 피고용인은 건강진단의 결과 더 이상 현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진단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한 후 고용주가 15일 이내에 해당 피고용인을 다른 적절한 업무에 배치하지 못하거나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즉시 사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고용인은 2달치 임금을 보상금으로 고용주에게 요구할 수 있다.

사. 노조

체코에서 노동조합의 결성 및 노동자의 조합가입은 자유로 노동조합에 가입된 노동자수는 2006년 6월 기준 약 11%로 1989년의 92%에서 크게 감소하였다. 특히 민간기업 근로자의 경우는 10%도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노동조합의 주요 활동영역은 단체협상(고용자 및 고용주의 권리와 의무, 상호간 관계설정)과 통제, 노동법상의 피고용자에 대한 안전 및 건강 보호, 피고용자 사회기금 조성 및 용도에 관한 토론 참가 등인데 노동조합은 조합과 경영자간의 상호협정을 제외한 업무협의에 참석할 수 있으며 조합은 회사의 경영상태 및 전망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가 있다. 50명 이상의 고용인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는 노동자들이 감사위원회의 3인 중 1명을 선출할 권리가 있으며. 그밖에 경영권에 대한 노동자들의 개입에 관한 법적 요구조건은 없다.

연도별 노동조합 가입자수(명)

	1995년	2000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 6월
조합원수	2,292,300	1,025,800	745,367	677,573	610,000	569,000

자료원: Czech-Moravi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1995-2006(2007.12월 최신자료)

아. 사회보장제도

체코 내에서 일하는 모든 체코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체코의 사회보장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이는 외국회사 지사의 경우에도 해당된다.

사회보장제도는 연금보험, 실업보험, 질병보험의 사회보장성 보험과 의료보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 및 종업원이 법률로 정해진 요율에 따라 분담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전체 사회보장세율을 납부하여야 한다.

1) 사회보장 세율

체코의 사회보장세율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연금, 질병, 실업의 3대 사회보장세 34.0%와 의료보험 13.5%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용주가 종업원 급여총액의 35.0%, 종업원이 12.5%를 납부하게 된다.

정부의 재정개혁에 따라 2008년부터는 사회보장세 적용대상 소득이 체코 월평균 임금의 48배까지로 한도(Cap)가 설정되어 더 높은 소득에 대해서도 동 금액까지만 사회보장세가 적용되며, 2008년도 한도는 CZK 1,034,880 이다.

	고용주(%)	종업원(%)	계(%)
의료보험	9.0	4.5	13.5
연금보험	21.5	6.5	28.0
질병보험	3.3	1.1	4.4
실업보험	1.2	0.4	1.6
총 계	**35.0**	**12.5**	**47.5**

주: 질병보험의 고용주 부담은 2009년 2.3%, 2010년부터는 1.4%로 낮아질 예정

2) 사회보장세 신고 및 납부절차

고용주는 종업원을 채용하는 경우 근무시작일로부터 8일 이내에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종업원이 퇴직한 경우에도 퇴직일로부터 8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종업원의 신상에 변화(이름 변경, 결혼, 주거지 변경 등)가 생긴 경우에도 8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건 당 CZK 2만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회보장보험의 신고는 각 지역별 Czech Social Security Administraion(CSSZ)에 하며 의료보험은 General Health Insurance Company(VZP)에 한다. 사회보장세는 고용주가 종업원 분담분까지 사전공제하여 매 분기별로 CSSZ 및 VZP의 구좌로 각각 송금해야 한다.

8. 조세제도

체코의 조세제도는 1993년 1월에 시행된 소득세법(Income Taxes Act, Law 586/1992)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으며, 잦은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외국기업의 지사를 포함하여 체코 내에 신규로 설립된 회사는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세무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회계법(Accounting Act)의 개정으로 2001년 1월 1일부로 납세자가 회계연도(Tax Period)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되었으며, 회계연도를 역년(Calendar year)과 달리 정하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체코 정부가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마련한 세제개편안이 2007년 8월 21일 하원을 통과하여 10월 5일 대통령이 서명함에 따라 2008년부터 법인세 및 소득세율이 대폭 인하되고, 부가가치세 할인세율은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체코의 소득세 제도는 신고납부 제도를 따르고 있다.

가. 법인세(Corporate income tax) : 24%

○ 2008년 21%, 2009년 20%, 2010년 19%로 단계별 인하 예정

□ 기타 원천과세(Withholding taxes)

○ 체크 비 거주자에 대한 배당, 로열티 등에 부과

세율	적용 대상
25%	License payments, royalties, rents and operating lease payments, copyright payments, payments for technical assistance, business consultancy and other related services
15%	Dividends, profit shares and other related distributions, depository promissory notes
1%	Financial lease payments

○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이중과세방지협정에 의하여 일부 세율 감면
- Dividends: 5% 또는 10% (한국 기업이 25% 이상의 지분 보유 시 5% 적용)
- Interest: 0% 또는 10% (정부에 대한 경우 0% 적용)
- Royalties: 0% 또는 10% (저작권에 대해서 0% 적용)

○ 2008년부터 15%로 단일화되고, 2009년부터는 12.5%로 인하예정

나.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 : 과세소득에 따라 15%-32%

과세소득(CZK)	개인소득세
0-121,200	12%
121,201-218,400	CZK 14,544 + CZK 121,200 초과소득의 19%
218,400-331,200	CZK 33,012 + CZK 218,400 초과소득의 25%
331,200 이상	CZK 61,212 + CZK 331,200 초과소득의 32%

○ 2008년부터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세율은 2008년 15%, 2009년부터 12.5%로 인하
- 과세 소득은 공제 대상이었던 사회보장세 본인 부담분 뿐 아니라 고용주 부담분도 개인 소득에 포함되는 Supergross Wage로 확대, 실효세율은 2008년 23.1%, 2009년 이후 19.4%임

다. 부가가치세(VAT) : 19%

○ 식품류(과자, 커피, 차 등 포함), 서적, 의약품, 의료관련 서비스, 교통, 문화서비스 등은 5%
- 2008년부터 5% 세율 적용대상 품목의 부가가치세율이 9%로 인상

라. 소비세(Excise tax)

○ 석유 및 석유제품, 주류, 담배에 부과

마. 도로세

○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부과되며 승용차의 경우 엔진 배기량에 따라, 트럭 등 상용차량의 경우 차축 수와 중량에 따라 부과됨
○ 세금은 승용차의 경우 연 CZK 1,200 – 4,200, 트럭의 경우 CZK 1,800 – 50,400 임

바. 부동산세(Real estate tax)

○ 토지세와 건물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기와 지역, 사용 목적에 따라 다름
○ 2008년부터 농지에 대한 부동산세 면제

사. 부동산 양도세(Real estate transfer tax): 3%

아. 상속세: 0.5% – 20%

○ 직계 존비속에 대해서는 면제
○ 2008년부터는 방계친척(형제, 자매, 3촌 이내, 자녀의 배우자, 배우자의 존비속)에 대한 상속세도 면제

자. 증여세: 1% – 40%

○ 2008년부터 직계 존비속 및 방계 친척에 대한 증여세 면제

차. 기타

○ 2008년부터 전기, 가스 및 고체연료에 대한 에너지세 신설
- 전기: CZK 28.30/MWh
- 가스: 가스 종류에 따라 CZK 0/MWH–CZK 264.80/MWh

9.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가. 외환관리

체코의 외환관리는 '95년 10월 1일부로 신외환법이 발효되면서 크라운화의 완전태환이 실시되고 있다. 이 조치로 경상거래의 완전자유화 및 자본거래의 일부 자유화가 실시(IMF 8조국)되었으며 체코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완전자유화, 기업 및 개인의 외환구좌 보유 허용 그리고 개인의 외환보유 무제한 허용 조치가 이루어졌다.

외환거래에 있어서 내외국인 구분 없이 완전 자유화되어 있어 과실송금에도 어떠한 제약도 없다.

나. 현지 자금조달 방법

현지투자에 필요한 자금은 현지 금융기관에서 조달할 수 있으며, 체코의 은행들은 투자자에 대한 대출에 적극적이다. 현재 한국 데스크가 운영되고 있는 체코 은행은 다음과 같다.

○ KB(Komercni banka)
- Add : Vaclavske nam. 42, 114 07 Praha 1, Czech Republic
- Tel : +420 222 420 119 / Fax : +420 222 420 202
- E-mail : inho_lee@kb.cz
- 담당자 : 이인호, Relationship Manager(M/P: +420 606 711 770)

○ CSOB(Ceskoslovenska obchodni banka)
- Add : Radlicka 333/150, 150 57 Praha 5, Czech Republic
- Tel : +420 224 114 169/ Fax : +420 2224 119 577
- E-mail : jknoppova@csob.cz
- 담당자 : Mr. Prmysl Hanzelka, Director of Corporate Sales(M/P: +420 603 800 391)
  Ms. Jolana Knoppova, Int'l Corporation Desk(M/P: +420 737 201 301)

Ⅴ. 기타 유용한 정보

1.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체코의 연간 수입 규모는 2006년 기준 951억 달러로 EU 신규가입국 중에서는 폴란드에 이어 2위의 수입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04년5월1일 EU 가입에 따른 수출호조 영향으로 수입도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체코의 인구는 1천만 명 정도로 유럽에서도 소규모 국가에 속하고 1인당 GDP는 2006년 기준 13,884 달러이나 현지물가에 따른 구매력을 감안한 구매력 기준 1인당 GDP는 2006년에 23,399 달러에 달할 정도로 중동부유럽에서는 높은 소득수준을 보유하고 있다.

나. 시장특성

1) 산업특성

체코는 전통적인 공업국가로 오랜 제조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또한 기계류 산업전반에 걸쳐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공산주의 통치를 겪으면서 일반 소비재산업은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 동안 서비스 부문은 취약했으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이후 서비스 산업 또한 급속히 발전되어가고 있으며, 주요 산업으로는 자동차 등 수송기계류를 포함한 기계류, 화학, 식품공업 및 유리산업 등이 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국가가 전체산업을 계획, 투자 관리해 왔기 때문에 산업간 치열한 경쟁은 없으며, 지방특성에 맞게 전국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대체로 기업의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1993년에 제1차 대기업 민영화를 통해 약 950여 개 기업을 민영화 조치 하였으며, 1994년에 86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 2차 민영화 작업을 완료한 바 있다. 2000년대 들어서도 2004년에 은행들을 민영화한 데 이어, 2005년에는 국영통신회사를 민영화하였으 며, 2008년에 프라하공항 민영화 계획 등 대부분의 국영회사를 민영화하고 있다.

2) 소비특성

체코는 과거 동구권 국가 중 제2의 높은 국민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구 사회주의 국가들 중 비교적 풍족한 소비수준을 누렸으나 일부 부유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아직 월평균 소득이 1,000 달러 미만으로 낮아 중·저가 품목의 구매를 선호하고 있다. 특히 체코 소비자들은 일반적으로 충동구매 성향이 약한 편이고 다소 엄격한 계획 구매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유명 상표에 대한 맹종 현상이 낮은 편으로 상품구입시 가격 대비 품질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소득 증가에 따라 특히 유행상품의 경우 점차 유명상표 제품을 선호하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크리스마스, 부활절 기간 중 구매가 왕성하며, 7-8월의 휴가철은 구매 활동이 침체되므로 이를 대비하여 수입 업체들은 1-2월 및 9-10월에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생활 수준은 월평균 명목 임금이 2006년에 950 달러 정도로 서유럽에 비해 낮은 편이나 가구 당 2인 소득, 저렴한 기초 의식주 비용, 교육비 및 의료비의 전액 정부부담 등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은 낮은 편이 아니며, 특히 운동용품, 레저 용품, 문화 용품 등은 고가품이 선호 되는 경향이 있다. 이밖에 정부의 사유재산 반환으로 부동산을 돌려받은 계층이나 신흥 비즈니스맨 등은 고급 소비계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전 인구의 3% 내외는 가격에 관계없이 소비할 수 있는 고소득층으로 분류되고 있다.

상권의 경우 개방 이후 유통업 등 서비스 분야가 자유화됨에 따라 인근 서유럽의 대형 유통업체들이 유통업에 대거 진출하여 상권을 장악해 가고 있으며, 현지 진출 중국인 및 베트남인 들이 의류, 신발류 등 일부 소비재 품목의 상권을 형성해 가고 있다.

수입상품의 경우 체코는 시장이 협소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중심부에 위치, 선진국의 고급제품, 동남아, 구동구권 등으로부터 수입된 중·저급 상품들이 혼재하고 있어 수입상품 간 품질 및 가격이 매우 다양한 편이다.

다. 유통구조

체코 내 유통단계는 수입업자/도매업자, 도매업자(분배업체) 및 소매상의 2-3단계로 되어 있으며,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는 1단계가 생략된다. 수입/도매업체는 소매업체의 소량 주문 수용을 위해 보세창고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유통마진은 품목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마진율은 높지 않은 편이다. 마진율 체계는 대개 1:2:3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수입업자 마진율이 10%일 경우 도매업자 20%, 소매상 30%의 마진을 취한다.

프라하 및 주요 지방도시에는 백화점이 있으나 백화점 숫자가 아직 적어 전체 유통분야에서의 백화점 비중은 아직 크지 않으며 서구의 유통 업체들이 대형 하이퍼마켓(TESCO, MAKRO 등) 및 슈퍼마켓 형태로 체코 유통업계에 대폭 진출하고 있어 유통분야의 확대 및 현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형 쇼핑몰의 건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라. 한국상품 인지도

현대자동차가 아시아산 자동차로서 판매 1위를 유지하고 있고, 체코 내에 생산공장 투자를 추진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LG 전자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과 판매신장으로 이들 대기업에 대한 브랜드 인지도는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관 조사에 의하면 일반인의 경우 삼성전자와 LG 전자가 한국업체라는 사실을 아는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소수에 그치고 있으며, 일반 제품의 경우 한국상품에 대한 소비 자 인지도는 극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마. 유망상품

품목	사 유	경쟁국
CCTV 카메라	현지수요 증가, 제품경쟁력 보유	중국, 대만, 이태리
셋톱박스	현지수요 급증, 제품경쟁력 보유	중국, 대만
초음파영상 진단기	가격경쟁력 보유	독일
카스테레오	가격경쟁력 및 인지도 제고	대만, 중국
액정디바이스	품질경쟁력 및 인지도 제고	일본, 대만

2. 물가정보

□ 도시 : 프라하(체코)			- 환율 : US$1 = CZK23.823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529	7.1	구두(1켤레, 소가죽)	84
1.2	넥타이(1개, 실크100%)	25	7.2	치약(150g, 1개)	0.7
1.3	와이셔츠 (1벌,면100%,긴팔,흰색,현지브랜드)	52.9	7.3	칫솔(1개)	2.6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4.6	7.4	면도기(1세트)	9.1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850	7.5	건전지(1세트, 1.5V AA)	2.7
1.6	스타킹(1켤레,밴드타입,현지브랜드)	6.5	7.6	화장지(1통, 300매)	8.3
1.7	청바지(Levi's)	108.7	7.7	비누(1개)	1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7.1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4.6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5.4	8.2	볼펜(12개)	3.8
2.3	닭고기(1KG, 생닭)	1.89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0.8
2.4	쌀(1KG,Short Grain)	1.3	8.4	공CD(1통, 12개입, 700MB)	5
2.5	밀가루(1KG)	0.2	8.5	휴대폰(범용형)	125
2.6	설탕(1KG, 백설탕)	0.75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14.7
2.7	계란(10개)	1.04	8.7	인터넷가설비(1회최초,1회설치)	75.4
2.8	감자(1KG, 현지산)	0.17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45
2.9	미네랄워터(1.5ℓ,Evian 1Pet)	0.42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18,465.35
3.1	고추장(1Kg)	11	9.2	엔진오일(1L)	12
3.2	된장(1Kg)	7	9.3	휘발류(1L)	1.3
3.3	라면(1개)	1.5	9.4	자동차등록비(2,000cc)	42
3.4	설렁탕류(1인분, 설렁탕, 곰탕등)	18	9.5	자동차보험료 (2,000cc,1년,신규종합보험)	1,049
3.5	불고기(1인분, 200g)	15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16	10.1	지하철(1구간)	0.83
3.7	김치찌개(1인분)	13	10.2	시내버스(1구간)	0.83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1.04
4.1	햄버거(1개)	4.2	10.4	택시(추가요금/Km)	1.04
4.2	피자(1판)	8.4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0.4	11.1	전화개통비 (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1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1.1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13.8

4.5	담배(수입산, 1갑)	2.4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 평상)	0.2
4.6	위스키(1병, 750ml)	23.1	11.4	공중전화(3분, 시내 평상)	0.16
4.7	커피(1병, 175g)	7.3	11.5	국제전화(현지-서울,3분,평상)	1.43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p)	0.3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nished)	1,260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 1통, 10g 이하, 현지-서울)	0.5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1,050	11.8	특급우편(DHL, 1개, 1Kg 이하, 현지-서울)	68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11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100~2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1.8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0.41
6.1	TV(29인치, 칼라, 범용)	541			
6.2	VTR(6헤드, 범용)	150.7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04.5			
6.4	전자레인지	108.7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1,888.5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1,616			

□ 도시 : 프라하(체코)			- 환율 : US$1 = CZK23.823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 (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35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 급여)	301.6
12.2	외국인학교(등록금,American School)	1,175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200~5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	18.3	사회보장부담금 (월 급여 대비%, 연간)	12.5%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1년간)	17,136.38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22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8,335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28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1년간)	19,827.9	18.6	연간국경일	13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 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61	18.8	노동쟁의시 냉각기간일수	30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9,235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0 시간
13.3	골프공(1타)	23.5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500	19.1	법정최저자금	8,395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1.7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84
13.6	영화관람료1회(개봉관, 성인최신)	6.63	19.3	외국인업체세제혜택(법인세)	26%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세제혜택(개인소득세)	15~32%
14.1	의료보험료(4인가족,Full Cover,치과제외)	월급의 9%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0.5~15%
14.2	병원진료비(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			
14.3	병원진료비(의료보험○,몸살감기,내과초진)	무료			
14.4	치과(스켈링, 1회)	42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0.5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9.4			
15.2	한국신문(1개월)	56.7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33.6			
15.4	잡지(1부,Time혹은 Newsweek)	0.66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43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301			
16.3	중급호텔(정상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78			
16.4	중급호텔(할인요금,싱글1박,시내중심지)	125			
16.5	조식(특급호텔,ContinentalBreakfast)	37			
16.6	조식(중급호텔,ContinentalBreakfast)	19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 급여, 대졸초임)	1,260			
17.2	사무실비서(월 급여, 학력불문)	839.5			

3. 바이어 발굴

가.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체코 바이어는 프라하무역관 홈페이지(www.kotra.or.kr/prague)의 인콰이어리 섹션을 통하여 발굴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아래와 같은 사이트에서 발굴이 가능하다.

- www.kompass.com
- www.abc.cz
- www.czechinfocenter.com
- www.edb.cz
- www.inform.cz
- www.czechcontact.com
- exporters.czechtrade.cz/en

나.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오프라인을 통하여 자사 제품의 체코 바이어를 찾는 방법으로는 KOTRA의 "해외시장조사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동 서비스는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 밖에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체코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를 참관하는 것으로 체코 내 개최 전시회에 대한 정보는 아래 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

- www.bvv.cz
- www.incheba.cz
- www.veletrhyavystavy.cz

4. 상관습 및 거래시 유의사항

가. 상담 일반사항

체코 수입업계의 거래 방식과 관련하여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기존 거래선을 쉽게 바꾸려 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현재 독일의 어떤 회사로부터 특정제품을 고정적으로 수입하고 있고 제품 공급 면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경우 제 3의 기업에서 상당히 좋은 거래조건을 가지고 접근을 해도 쉽게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체코 수입업체들이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것은 체코가 아직은 시장개방의 역사가 짧은 관계로 자본주의 시장경제 관행에 아직 미숙하고 기업인들이 일반적으로 보수적이고 적극적이지 않은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즉 정상적이라면 아무리 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는 거래선이 있더라도 정보 수집 차원에서 또는 동 기존 거래선과의 협상력 제고 차원에서 먼저 접근해 오는 다른 공급선과의 상담을 추진해서 정보를 입수하려 할 것이지만, 체코 기업들은 이러한 정상적인 관행과는 약간의 거리가 있는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현지 시장특성과 수입업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우리 업계가 체코 수입업체와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거래 관련 종합정보 일괄 송부

체코 업체들은 생소한 외국 업체와 처음 접촉을 시작할 때 잦은 교신보다는 한꺼번에 모든 자료를 일괄적으로 받아 보는 것을 선호한다.

즉, 거래희망서신, 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샘플, 가격표 등 거래에 필요한 모든 자료를 처음에 종합적으로 송부한다면 체코 업체의 관심을 끌 수 있으나, 이메일이나 팩스로 간단한 자사 소개와 거래를 희망하는 단순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에는 회신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 적극적인 사후 관리

거래에 필요한 종합 자료를 송부하고 2-3주 후에 이메일, 전화, 팩스 등의 방법으로 검토 결과를 타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그 이전에 체코 업체에서 회신을 해 온다면 더할 나위 없지만 회신이 없을 경우 우리 기업이 송부한 자료를 검토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거래조건 제시 시 유의사항

체코의 경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 시 주로 함부르크 항구를 이용하고 있으므로 가격을 제시할 때 FOB Korea(Busan) 보다는 CIF Hamburg로 하는 편이 바이어의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움 이 된다.
수출가격은 비교적 여유 있게 책정하되, 최소 주문량은 바이어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특히 첫 거래인 경우)이므로 최대한 낮추어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 거래 시 가격 오퍼를 받은 경우 체코 바이어들은 가격이 본인이 기대했던 수준보다 높을 경우 가격협상을 요구하기 보다는 바로 거래를 중단하는 경향이 있는 바 가격협상을 염두에 둔 가격 제시보다는 실제로 받을 가격을 처음부터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당수의 체코 바이어들은 아직까지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근 국 대형 수입상을 통해 한국산 물품을 간접 수입해 오고 있다.

즉, 체코 바이어들의 자본력이 아직은 취약한 관계로 한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데 따른 거래조건(한국 수출업체의 L/C 또는 T/T 선호, 약 2개월의 인도기간, 높은 수준의 최소 주문량 등)을 충족시키기 어려운 반면, 소량씩 적기(일주일 내)에 외상(60-90일)으로 공급해 주는 인근 국 대형 바이어로부터 간접 수입하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체코는 외상거래가 일반화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수용하되 바이어의 신용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수출보험에 가입하시는 것도 좋은 방안이다.

4) 전화/팩스 겸용 전화사용

체코 업체들 중에는 전화/팩스 겸용 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 팩스 송신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프라하 무역관에 팩스 전달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일반적으로 체코 무역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영어 구사능력은 최근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도 영어보다는 독일어나 러시아어 실력이 더 나은 편이다. 특히 처음 접촉 시 구두 영어(전화)보다는 팩스나 이메일을 이용하여 교신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다. 체코 비즈니스계의 이메일 사용은 최근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다.

체코를 방문하여 직접 상담할 경우에는 미리 체코 업체가 영어로 상담이 가능한 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영어로 상담이 불가능할 경우 통역을 사용하여야 원만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약속은 2-3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여야 하며, 특히 보헤미아 지역의 경우 사전에 식사약속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담 중 점심이나 저녁을 해야 할 시간이 되더라도 계속 상담을 진행하고 같이 식사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대화 시 정치 이야기 등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체코인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바 공산주의에 대한 화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계약체결 시 유의할 점

체코의 경우 오랜 사회주의 생활양식 및 의식이 아직도 중·장년 층에게 남아 있기 때문에 특히 이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추진할 때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체코 바이어들은 비 L/C거래를 선호하고 거래 착수 시부터 신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사회주의 체제하의 거래관행과 자본력 취약에 따른 독일 등 주변국의 수출업자들이 신용거래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L/C 거래가 선호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우선 주요 은행들이 L/C 개설 시 수입금액의 110%정도의 현금예치를 요구하고 있고 3개월 정도 자금회전이 막혀 금융부담이 크고 아직 서구기준의 현대적인 금융업무가 정착되지 않아 L/C개설 및 조건변경 등 수속이 복잡한데다가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됨과 아울러 은행을 통한 서류거래로 거래자료가 100% 노출되어 부가세를 피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들 수 있다.

규모가 커진 수입상이나 대 아시아 교역에 익숙해진 수입상들은 점차 L/C 거래를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으나 아직도 많은 경우 주문과 함께 T/T로 20-30%의 선수금 송금 후, 선적서류의 사본 확인과 함께 잔금 역시 T/T로 송금하거나 30%정도의 선수금분만 신용장을 개설하고 나머지 금액은 은행을 통해 D/P로 거래하는 방법 이외에 선수금을 T/T 송금한 후 나머지 금액은 신용장 개설 또는 은행을 통한 D/P거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L/C 거래의 경우 일부 수입업자는 선적 서류사본을 요청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관하여 처분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지 않은 사례들이 있는데 공항세관 등은 수취인 여부만 확인되면 선적서류 원본 없이 물건을 인도하는 경우도 있다.

5. 무역, 투자진출시 애로사항

가. 무역거래 시 애로사항

체코는 EU 국가로 무역이 자유화되어 있어 무역거래에 있어서 법적인 애로사항은 없다. 그러나 체코 바이어들의 대부분이 인보이스에 의한 역내 거래에 익숙해져 있고 아시아 등 원거리 국가와의 무역거래 경험이 부족하여, 국제적인 무역거래에서 사용되는 가격조건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실수요자인 공장등과 거래 시에는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 바 체코어

통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나. 투자진출 시 애로사항

공장설립을 위한 토지 매입 시 명확한 토지소유권 획득이 쉽지 않은데, 이는 공산화 이전 소유권자들과의 재산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등기부등본에서도 확인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공장부지 매입 때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지역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인설립 및 공장 건설을 위한 각종 인허가 서류가 체코어로 작성되어야 하고, 관련 법률이 수시로 개정되고 있어 이를 완벽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인 바, 투자 시에는 유능한 컨설팅업체나 법률회사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6. 진출 성공, 실패 사례

가. 진출 성공사례

□ LG 전자

LG 전자는 2003년 9월 프라하에 현지 판매법인을 설립한 이후 클라우스 체코 대통령의 영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에 자선기금을 기부하는 등 적극 후원하면서 매년 연말에 대통령 궁에서 자선행사를 개최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통하여 빠른 시간에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면서 체코에서 주요 가전제품 메이커로 자리를 굳혔다.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 및 적극적인 광고, 과감한 마케팅 전략에 힘입어 2006년 개장한 프라한 신공항에 LCD 모니터 700대를 적정 이윤을 포함하여 판매하는 쾌거를 이룩하는 등 법인설립 3년 만에 판매제품 65%를 프리미엄 제품으로 판매하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PDP TV, LCD TV, LCD 모니터, 홈시어터 등 프리미엄 제품 군에서 시장 점유율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법인 설립 이전인 2003년에 2천만 달러에 불과했던 매출액을 2004년에는 8천만 달러, 2005년에는 1억 4천만 달러, 2006년에는 1억 8천만 달러로 크게 확대해 나가고 있다.

나. 진출 실패사례

□ LG-Philips Displays

2001년 8월부터 체코 동부의 Hranice에서 생산에 들어간 LG-Philips Display Czech Republic s.r.o.는 CRT 생산업체로는 유럽 내 3개 제조업체의 하나로 LG전자와 Philips가 50:50 비율로 합작 투자한 업체다. 동사는 당초 Philips가 1999년에 체코 내 CRT 투자를 결정하여 Philips Display Components Ceska Republika s.r.o. 라는 회사명으로 공장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중에 LG전자와 Philips가 디스플레이부문의 합작사를 설립하게 됨에 따라 LG전자와 합작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에 따라 2001년 8월부터는 회사명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동사는 축구장 48개 규모인 44만㎡의 광대한 부지에 공장 건축면적만 7만 3천㎡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로 연 330만 개의 컬러TV용 CRT 생산능력의 3개 라인을 갖추고 있는 대규모 생산공장이다.
동 공장 건립 투자비로 3억 4천만 유로가 투입되어 투자 당시에는 외국인직접투자 중 체코의 최대 Greenfield 투자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TV 시장이 급격하게 평판 TV로 전환되면서 브라운관 TV용 CRT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동 사는 생산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으며, 2006년 1월부터 모기업인 네덜란드의 LG-Philips Displays Holding B.V.의 파산으로 운영자금에 압박을 받아 생산라인을 중단했다 체코 정부의 긴급자금 지원으로 다시 생산을 재개하는 등 파행을 겪어 왔다.

현재 동사는 청산 중으로 2006년 5월 네덜란드 모기업에서 독립한 데 이어 7월에 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조정 승인을 받아 9월에는 동사의 채무에 대하여 30%만 변제하는 것으로 296개의 채권자들과 합의하였다. 동사는 체코 정부로부터 받은 투자인센티브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받은 인센티브의 일부도 상환해야 하며 이에 따라 동사의 채권자에는 체코정부도 포함되어 있으며, 채무조정을 통하여 동사가 상환해야 하는 전체 채무는 CZK 437.5백만에 달하고 있다. 동사는 2007.2.22일 네덜란드의 부동산 개발업체인 CTP Invest에 약 4천만 유로에 매각되었다.

7. 이주정착 가이드

가. 집 구하기

체코에서는 주소지가 정해지지 않으면 장기비자 취득, 외국인거주 등록, 은행구좌 대출, 자동차 운행등록 등이 불가능하고 이삿짐을 인수받을 수 없으므로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집을 구해야 한다.

주거환경의 경우 개방 후 98년 이전까지는 외국인을 위한 주택공급이 부족하였으나, 주택 공급이 계속되어 외국인을 위한 주거환경은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임대료가 매우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외국인학교 인근(Praha 6)지역의 타운하우스(침실 3-4개 기준) 월 임대료는 EUR2,000-3,000 수준이며, 시 외곽지역은 EUR1,400-1,800 정도로 형성되어 있다. 여름이 서늘한 기후 영향으로 냉방 장치는 없으나 기타 난방, 가스, 전기, 수도, 전화 등 설비는 완비되어 있다.

가구가 비치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가구가 비치되어 있지 않아도 가스렌지, 냉장고, 식기세척기, 세탁기는 기본적으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수도세, 전기세, 가스사용료 등은 매월 일정액을 집주인에게 지불하고 연간 단위로 정산하는 게 일반적이며, 전화료는 개인이 사용하는 만큼 지불하는데 한달 후에 청구서가 나오는 관계로 이에 대한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

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물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http://realestate.expats.cz 사이트에서도 적당한 집을 물색할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여 임대하는 경우 통상 임대수수료로 월 임대료의 1-2개월을 요구한다.

나. 행정절차

장기비자를 발급 받아 체코에 입국한 경우에는 입국 후 3일 이내에 지역별 외국인경찰서에 거주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 은행구좌 개설

은행구좌는 주소지만 체코에 있으면 장단기 체류자 모두 가능하며, 유로화나 달러구좌와 크라운 구좌를 동시에 개설할 수 있다.

체코는 외화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어 외화표시 구좌에 입금 및 출금이 자유로우며, 송금등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

라. 전화신청

임대주택의 경우 전화가 설치되어 있어 명의만 변경하여 사용하면 된다. 명의변경은 집주인이 해주는 게 일반적이다.

마. 자동차 구입

체코에는 현대, 기아, 대우차가 딜러를 통하여 시판되고 있으며, 정비소도 있어 한국차 구입에 문제가 없다. 체코는 왼쪽 핸들이며, 환경 오염 문제로 차 바퀴 뒤에 고무 패널과 공기정화기(catalyst) 부착, 헤드라이트 조절기, 상비 약품통, 고장표시 삼각대가 필수이므로 사용하던 차량을 반입할 때는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자동차 등록 시 필요).

바. 운전면허 취득

90일 이상 체코비자 보유자, 장기비자(1년 이상)보유자, 영구거주허가증 보유자는 동 서류에 기재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드시 거주허가증에 기재된 지역 내의 운전면허증 발급 기관에 자국 운전면허 증을 체코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교환 및 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운전자용 건강진단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이 10년인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유효 기간과 동일하다.

- ○ 신청서 (체코어 서식)
- ○ 한국 운전면허증
- ○ 국제 운전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 공식 번역본 (대사관에서 발급)
- ○ 운전자용 건강 진단서
- ○ 여권
- ○ 90일 이상 체류 비자 또는 장기거주 허가증 또는 영구거주 허가증
- ○ 컬러 사진 (45x35 mm) 1 매
- ○ 발급 경비 CZK 50

체코 운전면허 증 발급에는 통상 20일이 소요되나 급행료 CZK 500을 납부하는 경우 근무일 기준 5일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다.

사. 식품구입

한국식품점은 프라하에 한 곳이 영업 중이다. 배추, 무, 두부, 양파, 시금치, 당근, 상추, 파, 감자 등 정도는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프라하 외곽지역의 베트남 시장에서 여러 종류의 동양 식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한국 식품은 매우 제한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Tesco 등 다국적 유통업체들이 많이 진출하여 일반 생필품 구입에는 별 문제가 없다.

○ 아리랑
- 위치: Korunni 47, Praha 2
- ☎224 256 284

아. 의료

병원설비와 의료기술 자체에도 특별한 문제가 없으나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의료진이 제한되어 있다.

영어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은 아래와 같다.

Na Homolce Hospital Foreigner's Clinic	- Roentgenova 2, Praha 5 - Tel) 257-272-146
Health Centre Prague	- Vodickova 28, Praha 1 - Tel) 224-220-040
First Medical Clinic of Praha	- Vysehradska 35, Praha 2 - Tel) 224-923-801
Canadian Medical Care	- Veleslavinska 1, Praha 6 - Tel) 235 360 133
Unicare Medical Center	- Na dlouhem lanu 11, Praha 6 - Tel) 235-356-553

앰블런스가 필요한 비상상황에서는 국번 없이 155번으로 호출할 수 있고 이 경우 공중전화도 동전이나 카드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약국은(Lekarna) 통상 월-금 08:00-18:00까지 영업 하며 지역별로 한밤중이나 주말에도 영업하는 약국이 지정되어 있다. 처방약이나 OTC약품 모두 약국에서만 판매하고 있다.

자. 레저 및 스포츠

현지의 주요 레저는 테니스, 수영, 스케이팅, 낚시, 스키, 카누, 승마, 사이클링 등이며 최근 골프장 설립이 활기를 띠고 있다. 테니스의 경우 지역별로 양질의 클레이 코트와 실내 코트가 많으며 사용료도 저렴한 편인데 이는 테니스가 체코에서 가장 대중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이다.

수영장은 호텔이나 기타 공공시설에 대부분 설치되어 있으며 스케이팅은 프라하 시내에 각 구별로 실내 링크가 있다. 스키의 경우 독일 국경지역, 오스트리아 및 폴란드 국경지역, 슬로바키아 및 슬로베니아 등지에서 즐길 수 있다.

차. 치안

치안상태는 아직 비교적 안전한 편이나 급속한 개방에 따른 차량도난, 주택절도 등 치안 사범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객의 대거 유입으로 수도 프라하 중심가에는 소매치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상대로 한 사기 사례도 많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고액 현금은 휴대하지 않는 것이 좋다. 소매치기는 지하철, 찰스다리, 구시가 광장, 맥도날드 등 관광객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빈발하고 있다.

체코인들의 동양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좋지 않은 편이나(베트남인 노동자와 중국 불법 이민 등) 일본인과 한국인에 대해서는 다소 예외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현지인들로부터 불필요한 차별 대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외출 시 복장과 차림새를 단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체코인들은 주로 한국산 자동차와 전자제품 등을 통하여 한국인을 인식하며 문화, 예술적인 이해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카. 한인사회

현재 체코 내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인들은 대사관 등록기준 약 1350명 정도로 2004년 5월 KAL 취항 이후 급속 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인회가 2000년 말 결성되어 활동하고 있다. 개신교와 천주교 등 종교모임도 있으며 이외에도 1997년 3월부터 한글학교가 개교되어 매주 금요일 운영 되고 있다.

타. 자녀 교육여건

체코 공화국 내 모든 교육기관은 무료이며 대학 이하에서 교과서 및 각종 교육자료도 무료로 배부하고 있다. 의무교육은 초급 교육과정인 6세부터 15세까지 9년이다.

교육제도는 3-6세 사이에는 유아원 및 유치원에 재학하게 되며 6-15세까지는 초급학교 교육으로 의무교육 이다.

초등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다음단계로 4년 과정의 중등교육 과정을 밟게 되는데 중등과정은 대학진학을 대비하는 일반교육과정과 기술과정을 받게 되는 직업학교로 크게 나뉘어진다.

중등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학교성적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게 된다. 현재 체코 내에는 대학을 포함해 123개의 고등교육 시설이 있다.

외국인을 위한 학교로는 영어로 교육을 하는 프라하 국제학교(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미국계), 영국계 국제학교(British 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외에도 프랑스, 독일, 이태리, 일본, 스페인 학교 등이 프라하 시내에 개설, 운영되고 있다.

한국인 자녀들의 경우 체코 거주비자를 소유하고 있으면 체코 교육기관에 체코인과 동등한 자격으로 입학할 수 있으나 체코어로 수업을 하는 단점이 있으므로, 대부분 영어로 수업하는 학교를 희망해 상기한 프라하국제학교(ISP)와 영국계 국제학교인 BISP로 진학하고 있다.

주요 외국인 학교

학교명	사용언어	홈페이지
The International School of Prague	영어	www.isp.cz
The British International School / Prague	영어	www.bisp.cz
The English International School / Prague	영어	www.eisp.cz
Riverside School Prague	영어	www.riversideschool.cz
The English College in Prague	영어	www.englishcollege.cz
Lycee Francais de Prague	불어	www.lfp.cz
Deutsche Schule Prague	독어	www.dsp-praha.cz
Osterreichische Schule Prag	독어	www.oesp.cz
1st International School of Ostrava	영어	www.is-ostrava.cz
The International School of Olomouc	영어	www.tisol.cz

8. 출장가이드

가. 기후

체코의 기후는 대륙성 기후이기는 하나 겨울이 비교적 온화하며 여름이 무덥지 않다. 연평균 기온은 9-10도 정도이며 여름 최고 기온은 32-35도, 겨울 최저 기온은 영하 12-20도 정도이다. 여름은 6월부터 8월까지 평균기온 18도 정도이며 겨울은 12월부터 1월까지이고 평균기온은 영하 3도 정도이다. 연평균 강우량은 495mm로 강우일은 월 5-9일 정도이며, 특히 가을철(10-11월)에는 일교차가 심한 편이다.

주요 도시 연평균 기후

	Praha	Brno
연평균 기온(℃)	10.2	8.9
최고온도 최저온도	36.7 -12.7	33.0 -14.5
연평균 강우량(㎜)	437.6	564.1
강우일(일)	145	142
강설일(일)	38	46

주: 2005년도 기준임
자료원: 체코 통계청, “Statistical Yearbook 2006”

나. 시차/근무시간

1) 한국과의 시차

한국이 체코보다 8시간이 빠르며 3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부터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 새벽까지 실시되는 유럽지역 Summer Time 기간 중에는 7시간이 빠르다. 즉 체코의 오전 9시는 같은 날 한국의 오후 5시(Summer Time 기간 중에는 오후 4시)가 된다. Summer Time은 전 유럽이 동시에 실시하며 체코는 독일, 프랑스 등 서구 대륙지역 주요 국가들과 동일 시간대이다.

2) 근무시간

일반회사	08:00 - 16:30	토.일 휴무
은행	09:00 - 17:00	토.일 휴무
식품점	07:30 - 18:00	토요일 오전 개업
일반상점	09:00 - 19:00	토요일 17:00까지 개점
슈퍼마켓	09:00 - 20:00	일부는 일요일도 개점
하이퍼마켓	09:00 - 21:00	일요일도 개점
무역관	08:30 - 17:30	토.일 휴무

주: 상기 근무시간은 직종별 일반적인 근무시간이며, 제조업체의 경우 오전 6~7시에 시작하여 오후 2~3시에 문을 닫는 곳도 많다. 또한 TESCO 등 일부 하이퍼마켓들의 경우 24시간 연중 영업하고 있다.

다. 주요 단위

1) 도량형

길이의 경우 미터(m), 무게의 경우 그램(g)의 미터법을 사용하고 있다.

2) 전기규격

일반가정의 경우 50㎐, 220V로 2 Round Plug 형태(3 Round Plug의 경우 가운데 단자는 접지용임)가 사용되며, 공업용으로는 50㎐, 220V와 380V가 사용된다.

라. 출입국/비자

1) 비자취득

'94.10.6일 양국간 비자 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객(90일 미만 체류)은 비자 없이도 입국이 가능하다. 그러나 장기체류(취업 및 유학)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 또는 제3국에서 입국목적에 상응하는 장기비자를 발급 받고 입국하여야 한다.

취업을 위한 장기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취업할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 노동사무소(Labor Office)로부터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발급 받아야 한다. 장기비자의 관련 규정 내용 및 실제 시행여부 등이 수시로 변동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체코 대사관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기 체류자는 출생 증명서, 무범죄 사실 증명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국인 경찰서에 매 1년마다 체류기간 연장을 해야 했으나, “외국인 거류법(Act on the Stay of Foreigners)”의 개정으로 2005년 11월 24일부터 장기비자의 유효기간이 투자기업의 법인장에 대해서는 2년 까지 연장되었다.

또한 2008년부터는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도록 노동허가서와 장기비자를 겸하는 2년짜리 그린카드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며, 동 그린카드가 도입되면 현재 5-6개월이 소요되는 장기비자 취득이 1-2개월로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 **비자 발급처**

○ 주한체코대사관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21
- 전화: (02) 725-6765/6
- 팩스: (02) 725-6452
- E-mail : seoul@embassy.mzv.cz
- Homepage : www.mzv.cz/seoul
- 영사 업무시간 : 월,수,금 09:30 - 11:30
- 비자발급 소요기간 : 2-4개월
- 구비서류 : 신청서, 사진 3매, 여권사본, 본인명의 은행잔고증명서와 신용카드 사본, 거주목적 입증서류(학생의 경우 입학허가서, 취업의 경우 노동허가서 등), 거주지 입증서류(체코 주택 임대서류 등), 신원조회서, 해외여행자 보험증

2) 방역

방역은 특별히 규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전염병 발생시 단기적으로 도입하나 규제 정도는 극히 미약하다.

3) 출입국 절차 및 유의 사항

입국 시나 출국 시에 여권만 제시하면 제한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며 일정액(CZK 20만) 이상의 현금 지참 반. 출입은 반드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입국 시 체코 내 체류호텔 예약 여부, 충분한 금액의 여비 지참 여부 그리고 체코 출국 교통편(공항으로의 입국의 경우 귀국 항공권 지참 여부), 보험가입여부 등을 입국 심사관이 요구할 수 있다.

4) 세관 규정

1인 당 포도주 2리터, 술 1리터, 담배 200개비까지는 허용된다. 여행 경비로 인정되는 범위인 CZK 200,000 상당의 외화는 신고 없이 입국 가능 하며, 그 이상의 현금은 입국 시 신고만 하면 출국 시 반출에 문제가 없다.

입국 시 특별히 제한하고 있는 반입 품목은 없으나 마약, 무기 등의 반입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금지되고 있으며 문화재 보호를 위해 문화재성 물품의 반출 시는 국가 문화재가 아니라는 증명서를 휴대해야 한다.

최근에는 음식물을 반입하다 세관에 압수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5) 공항-시내 교통편

프라하 국제공항(Ruzyne Airport)는 시내중심으로부터 20Km 거리에 있으며 버스-지하철 또는 택시를 이용하여 시내 중심에 진입할 수 있다.

□ **택시**

터미널 앞에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이용할 경우 도심까지 약 30-50분 소요된다. 요금 은 거리에 따라 다르면 도심까지 보통 공항택시(Airport Taxi)를 이용하는 경우 약 CZK 800, AAA라고 써있는 일반 택시를 이용하는 경우 약 CZK 400-500 정도 소요된다.

□ **버스-지하철 이용 시**

터미널 길 건너편 버스정류장에서 119번 버스를 타고 종점(Dejvicka)에서 내려 지하철 A선으로 갈아타고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으며 시간은 약 40-60분 소요된다. 요금은 CZK 20의 승차권을 구입하면 버스와 지하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버스 승차 시 노란색 무인 계찰기에 승차권을 찍으며, 지하철로 환승 할 때는 동 승차권을 가지고 그냥 승차하면 된다.

마. 환전

□ **환전**

주말이나 은행 개점 시간 이외의 경우에는 호텔이나 시내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환전소를 이용하되 환전소 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몇 군데를 둘러보고 환전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일부 환전소는 환율을 유리하게 고시해 두고 대신 고율의 커미션(4-5%)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체코 크라운화는 100% 태환성이 있기 때문에 암시장이 없으며 시내 길거리에서 환전을 권유하는 사람은 전부 사기꾼이므로 주의가 요망된다. 특히 근래에 새로이 등장한 사기 수법으로 한 사람이 접근해서 환전을 하라고 권유하면 환전 여부에 관계없이 얼마 후 또 다른 사람이 접근해서 경찰이라고 하면서 불법 환전을 했다며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데 이 경우 물론 환전을 하지 말아야 하며 경찰이라고 하는 사람도 사기꾼이므로 절대로 여권이나 지갑을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계속 보여 달라고 우기면 지나가는 경찰차 혹은 정복 경찰을 불러 신고하거나 경찰서에 가자고 하는 것이 좋다.체코 화폐는 지폐의 경우 50, 100, 200, 500, 1000, 2000, 5000 크라운(Korun)의 7종이 있으며, 동전의 경우 50할레르, 1, 2, 5, 10, 20, 50 크라운의 7종이 있다.

□ **신용 카드 사용**

신용 카드 결재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며 호텔, 레스토랑, 선물 가게 등에서는 카드 결제가 가능하지만 아직도 일부 식당 등 통용되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미리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현금을 확보하는 것이 좋다.

체코 크라운화의 연도별 평균 환율

연 도	평 균 환 율	
1991년	US$1 = Kc29.487	
2000년	US$1 = Kc38.590	EUR 1 = Kc35.610
2001년	US$1 = Kc38.038	EUR 1 = Kc34.080
2002년	US$1 = Kc32.736	EUR 1 = Kc30.812
2003년	US$1 = Kc28.227	EUR 1 = Kc31.844
2004년	US$1 = Kc25.701	EUR 1 = Kc31.904
2005년	US$1 = Kc23.947	EUR 1 = Kc29.784
2006년	US$1 = Kc22.609	EUR 1 = Kc28.343
2007.12.14일 현재	US$1 = Kc18.201	EUR 1 = Kc26.410

자료원: 체코 중앙 은행(2007. 12월 최신자료)

바. 교통/통신

1) 우리나라와의 교통

2004.5.15일부터 대한항공이 인천과 프라하 간 직항노선을 개설하여 겨울에는 주 3회(월, 목, 토), 봄부터 가을까지는 주 4회(월, 화, 목, 토) 운항하고 있다. 또한 인근 서유럽을 경유하여 입국할 수도 있다.

2) 교통편 이용

프라하는 대중 교통 수단이 잘 발달되어 편리하며, 시내 중심가에는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대중 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하다.

□ 택시

콜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며, 시내 중심가에서 손님을 대기 중인 택시는 거의 바가지 요금을 부과하므로 가능한 타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 할 경우 목적지를 이야기하고 금액을 사전에 합의한 후 승차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콜택시로 가는 경우에 비해 일반적으로 최소 두 배 이상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외국인들이 직접 이용 가능한 콜택시는 AAA(☎14014)가 있다. 전화로 14014를 호출하면 콜택시 안내원이 나오며 거의 대부분 영어 구사가 가능하다. 전화 시 사전에 반드시 현재 자신이 있는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 (거리명 및 번지수 혹은 호텔명 등) 공중전화로도 이용 가능하다.

□ 지하철

지하철은 모두 세 개의 노선이 운영되고 있으며 전차와 시내 버스를 동일한 표로 자유롭게 환승 가능하다. 성인이 이용할 수 있는 티켓은 14크라운 및 20크라운 두 가지로 14크라운 짜리는 환승이 불가능하며 개찰기에 찍힌 시간으로부터 20분 혹은 탑승 정거장으로부터 5정거장까지만 이용 가능하고 20크라운 짜리는 75분 이내에서 자유롭게 환승 가능하다.

차표는 지하철역 구내의 무인판매기나 시내의 신문판매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차표는 지하철 의 경우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입구의 노란색 무인 개찰기에서 차표를 펀칭(Punching)한 후 목적지 도착역을 벗어날 때까지 보관해야 하며 전차나 버스의 경우 탑승구 옆에 있는 노란색 개찰기를 이용하면 된다.

무임승차의 경우 티켓 요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어야 하며 특히 외국인(특히, 동양인)들의 경우 중점 단속 대상이므로 반드시 표를 구입한 후 승차하는 것이 중요하다.

□ 전철(Tram), 버스

시내 중심가는 대부분 전철이 운행되며 전철 구간과 연계되는 버스는 주로 외곽 지역을 운행한다. 전철과 버스는 지하철을 이용할 때와 동일한 차표를 구입해서 사용한다. 버스 내에서도 티켓을 구입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요금은 25 크라운이다.

□ 승차권 유형 및 가격

1회용 일반 승차권

(단위: Kc)

구분	가격(Kc)	유 효 기 간
성인용	20	75분(환승 가능), 주말 90분
	14	20분(환승 불가), 지하철 5정거장(30분 내 환승 가능)
학생(6-15세)	10	75분(환승 가능), 주말 90분
아이(5세까지)	무료	

기간별 승차권

기 간	가 격(Kc)
1일	80Kc
3일	220Kc
7일	280Kc
15일	320Kc

정기승차권

구분	기간		
	1개월	3개월	1년
일 반	460Kc	1,260Kc	4,150Kc
학 생	230Kc	630Kc	없음

3) 국제전화 사용

체코 국제 전화 사용료는 한국에 비해 상당히 비싼 편이기 때문에 호텔 룸에서 사용할 때에는 한국 수신자 요금 부담 조건의 콜렉트콜이 유리하다.

콜렉트콜을 이용할 경우 외부 통화번호(호텔 등 구내전화의 경우) + 0042008201을 누르면 서울 국제 전화국 교환원이 직접 연결되며 데이콤 국제 전화카드도 사용 가능하다.

호텔 룸 에서 바로 국제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DDD 이용 시에는 외부통화번호 + 00 + 82(한국) + 2(서울) + 전화번호순으로 번호를 누르면 된다.

전화카드를 구입하여 공중전화를 이용하는 것도 경제적인데 전화카드는 호텔 프론트, 지하철역, 우체국, 담배 가판대 등에서 구입가능하며 공중전화 사용 시에는 00+82 (한국) +2(서울의 경우) + 전화번호 순으 로 누르면 된다.

4) 우편

체코에서는 등기, 항공우편, EMS, DHL 등 모두 이용이 가능하다. 일반 항공우편의 경우 체코에서 한국까지 배달에 통상 일주일, DHL 등 특사우편의 경우 3일 정도 소요된다.

항공우편(10g 까지)을 한국에 부칠 경우 44 크라운 이며, 편지, 소포 및 EMS 발송 시 소요되는 각종 우편요금은 체코우체국 사이트(http://www.cpost.cz/jetspeed/?js_language=en)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사. 호텔/식당

1) 호텔

프라하의 호텔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요금은 동유럽 최고 수준에 속한다.

세일즈 출장으로 프라하에 방문하는 업체의 경우 프라하 무역관에 사전 요청할 경우 20-30%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단순 관광객은 무역관을 통해 예약할 수 없다.

비성수기인 11-3월에는 인터넷의 호텔 할인 예약 사이트(www.a-prague.com, www.hotel-prague.us 등)를 통한 예약이 무역관을 통하는 것보다 저렴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연중 4-10월은 관광 시즌으로 호텔예약이 매우 어려우므로 사전에 충분한 여유를 두고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급 호텔	- Inter-Continental, HILTON Prague, Corinthia Towers, RENAISSANCE, MARRIOT, RADISON SAS, Four Seasons HOTEL 등 - 숙박료는 SINGLE EUR 160, TWIN EUR 230 수준
2급 호텔	- HOTEL PRAHA, INTERNATIONAL, DIPLOMAT, EUROPA, PARK HOTEL 등 - 숙박료는 SINGLE EUR 120, TWIN EUR 180 수준
기타	- 3급 호텔 및 민박(PRIVATE) 시설 - 3급 호텔 요금은 SINGLE EUR70, TWIN EUR 100 수준이다.

○ 프라하 무역관 할인 계약 호텔
- Diplomat Hotel, Hilton Prague, Inter-Continental, Marriott, Corinthia Tower Hotel 등

2) 식당

가) 사전 참고사항

보헤미아인들은 식사 때 주로 맥주를, 슬로바키아인들과 모라비아인들은 포도주를 즐겨 마신다.

○ 주요 체코 메뉴
- Svickova (스비츠꼬바): 쇠고기 필레(허리고기)
- Veprovy rizek (베프조비 지젝): 커틀릿과 비슷한, 얇게 저며 튀긴 돼지고기
- Gulas (굴라쉬): 삶은 고기에 걸쭉한 국물을 곁들인 스튜
- Palacinky (빨라친끼): 아이스크림이 든 팬케이크
- Sopsky Salat(숍스끼 쌀라트): 믹스드 샐러드

나) 프라하 주요 식당

2000.10.16일 처음으로 한국식당(Seoul Restaurant)이 프라하에 개업한 이래 현재는 6개소가 영업 중(서울 식당은 폐업) 이다.

□ 한국 식당

○ Hanil Restaurant(한일관)
- 위치 : Slavikova 24, Praha 3 (☎222-715-867)
- 지하철(Metro A) Jiriho z Podebrad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Korea House(한국관)
- 위치 : Sokolska 52, Praha 2 (☎224-266-246)
- 지하철(Metro C) I.P. Pavlova역에서 도보로 2분 거리(약 100m)

○ Tokyo Restaurant(동경)
- 위치 : Srbska 347/2, 160 00, Praha 6 (☎233-326-670)
- 지하철(Metro A) Hradcanska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약 300m)

○ Yami Restaurant(야미)
- 위치 : Masna 1051/3, Praha 1 (☎222-312-756)
- 구시가 광장 근처에 위치 (일식 위주)

○ KOBA Restaurant (코바)
- 위치 : Dusni 6, Praha 1 (☎602-362-894)
- 구시가 광장 근처에 위치

○ Man-Na Restaurant(만나)
- 위치 : U Milosrdnych 10, Praha 1 (☎222-320-101)
- Intercontinental Hotel 인근에 위치

○ Mana Sushi House(마나)
- 위치 : Slezska 56, Praha 2 (☎222-513-369)
- 지하철(Metro A) Jiriho z Podebrad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 Gaya Restaurant(가야)
- 위치 : Sokolovska 100/94, Praha 8 (☎236-080-209)
- 지하철(Metro B) Krizikova역 근처

□ 중국 식당

○ 香港酒家(Hong Kong) : Letenske Namesty 5, Praha 7 (☎233-376-209)
- 프라하시내 중국식당들 중 한국 사람 입맛에 가장 근접

○ 皇宮酒家(China Restaurant Palace) : Narodni 40, Praha 1 (☎224-494-621)

□ 일본식당

○ NAGOYA : Stroupeznickeho 3181/23, Praha 5 (☎251-511-724)
○ KATSURA : Hotel Diplomat -2 Floor. Evropska 15, Praha 6 (☎296-559-298)
○ MASHHANA : Badeniho 3, Hradcany, Praha 6 (☎224-324-034)

□ 체코 식당

○ Prvni Novomestsky Restauraci Pivovar : Vodickova 20, Praha 1
- 직접 양조한 맥주 판매하며 돼지 족발 요리가 많이 알려져 있음

○ U Kalicha : Na Bojisti 12-14, Praha 2 (☎224-912-557)
- Svejk의 소설 배경이 된 곳

○ U Fleku : Kremencova 9-11, Praha 1 (☎224-934-019)
- 504년 전통을 가진 곳, 직접 만든 흑맥주가 일품

○ U Vejvodu : Jilska 4, Praha 1 (☎224-219-999)
- Pilsner Urquell 생맥주가 일품

○ Restaurace Pelikan : Na Prikope 7, Praha 1 (☎224-210-697)
- 저녁에는 체코 전통 춤인 폴카를 구경할 수 있음

□ 기타

○ Kampa Park : Na Kampe 8b, Mala Strana, Praha 1 (☎257-213-493/4)
- 찰스다리 옆 블타바 강변에 위치. 음식 수준이 높은 만큼 음식값도 매우 높은 수준이다. 강변쪽 테이블은 사전 예약이 필요하며 스칸디나비아 요리 전문점이다.

○ Restaurante Brasileiro : Na Prikope 22, Praha 1 (☎221-451-200)
- 브라질 바비큐 식당, 샐러드 바에 스시도 준비되어 있음

아. 관공서 관행

체코의 관공서 일 처리는 규정과 원칙을 지키려는 경향이 강하고 일 처리를 위한 접근 방법, 시스템은 잘 확립되어 있다.

그러나 세부적인 처리지침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도 많아 같은 사안에 대해 담당자별로 처리방법이 상이한 경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으며 이권이 관련된 정책 결정, 구매, 입찰 등 분야에는 독일, 미국 등 서방 대기업의 인맥이 깔려있는 경우도 있다.

특히 서유럽 등 선진국 기준에서 보면 정치권뿐 아니라 기업 내에도 아직 상당한 정도로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은행이 2006년 7월에 발간한 “Anti corruption in Transition 3 - Who is Succeeding --- And Why?”에 따르면 1/4 이상의 기업이 정부 입찰을 따기 위하여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있으며, 체코 기업들이 평균 매출액의 0.6%를 뇌물로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로 체코는 EU회원국이 된 지금도 사회적 부조리 제거를 강력히 요구 받고 있다.

자. 공휴일

1) 2008년도 공식 공휴일

신정(New Year's Day)	1. 1(화)
부활절(Easter Holiday)	3.23(일)-3.24(월)
노동절	5. 1(목)
2차 대전 종전 기념일(Liberation Day)	5. 8(목)
기독교 전파 기념일(Cyril & Methodius Day)	7. 5(토)
얀 후스 순교 기념일(Jan Huss Day)	7. 6(일)
성 바츨라프 탄생 기념일(Czech National Day)	9. 28(일)
독립 기념일	10. 28(화)
자유화 운동(Velvet혁명) 기념일	11. 17(월)
크리스마스	12. 24(수) - 26(금)

2) 출장 지양기간

7-8월 기간에는 학교 방학은 물론 직장인 대부분의 휴가시즌으로 담당자들이 휴가 중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때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한 경우 상대방의 휴가일정을 사전에 알고 대처하여야 한다. 또한 12월 중순부터 1월초까지는 많은 기업들이 휴무에 들어가는 바 이 시기를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차. 여행시 유의사항

1) 여행준비

한국과 계절 변화가 같으며 사계절이 뚜렷하다. 기온도 우리나라와 비슷하여 의복 준비 시 한국과 비슷하게 준비하면 무난하다.

2) 신변 안전

전반적으로 치안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사람들이 붐비는 장소, 특히 찰스다리, 구시가 광장, 맥도날드 등 관광객이 붐비는 식당, 백화점, 지하철 등에서 귀중품을 소매치기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여권 등 귀중품은 호텔의 금고(Safety Box)에 보관하고 사본을 휴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날 쓸 만큼의 돈만 소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야간에 시내 주요 관광지 이외의 외곽지역 출입 시 각별한 주의를 요하므로 가급적 시 외곽지역의 방문을 삼갈 것을 권장한다.

주간에도 제3국인(3-4명으로 구성)들이 경찰을 사칭하여 가짜 신분증을 제시하고 마약 밀매 등의 구실로 신분증, 지갑 등을 수색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럴 경우 바로 응하지 말고 경찰 사칭자들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신분확인이 곤란할 경우 제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신고요망)

3) 팁 제도

식당 등에서 팁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종업원이 서비스하는 식당의 경우 통상 10% 정도의 팁을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4) 응급시

여행 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614-414-476(영어 소통 가능한 radio police) 또는 158로 경찰에 연락할 수 있으며, 급한 발병으로 앰뷸런스가 필요할 경우 158번으로 연락하면 된다.

5) 문화적 금기사항

공산주의를 겪으면서 체코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바 비즈니스 대화 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관련된 주제는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카. 유용한 연락처

1) 현지 한국기관

주 체코 한국대사관

ADD	SLAVICKOVA 5, PRAHA 6 - BUBENEC, CZECH REPUBLIC
TEL	(420) 234-090-411
FAX	(420) 234-090-450
HOME	www.mofat.go.kr/czech/
E-mail	czech@mofat.go.kr

KOTRA 프라하 한국무역관

ADD	VACLAVSKE NAM.47, 110 00, PRAHA 1, CZECH REPUBLIC
TEL	(420) 245-005-650
FAX	(420) 245-005-651
HOME	www.kotra.or.kr/prague
E-mail	kotra@kotra.cz
주재요원	이규남(관장), 김병호(차장)

2) 비즈니스관련 현지기관

체코전국공업협회(CONFEDERATION OF INDUSTRY OF THE CZECH REPUBLIC)

ADD	MIKULANSKA 7, 113 61, PRAHA 1, CZECH REPUBLIC
TEL	(420) 224-915-679
FAX	(420) 224-919-311
HOME	www.spcr.cz
E-mail	spcr@spcr.cz
성격	153개의 대기업 및 경제 단체들로 구성된, 한국의 전경련에 해당하는 기관

체코상공회의소(ECONOMIC CHAMBER OF THE CZECH REPUBIC)

ADD	SEIFERTOVA 22, 130 00, PRAHA 3, CZECH REPUBLIC
TEL	(420) 224-096-258
FAX	(420) 224-096-257
HOME	www.komora.cz
E-mail	info@komora.cz
성격	전국 88개 지부와 131개 업종별 조합으로 구성, 총회원수는 약 20,000명

체코 투자청(CzechInvest)

ADD	STEPANSKA 15, 120 00, PRAHA 2, CZECH REPUBLIC
TEL	(420) 296-342-500
FAX	(420) 296-342-502
HOME	www.czechinvest.org
E-mail	czechinvest@czechinvest.org
성격	체코 산업무역부 산하기관으로서 투자관련 정보제공 및 투자자문 담당

체코무역진흥청(CzechTrade)

ADD	DITTRICHOVA 21, 120 00, PRAHA 2, CZECH REPUBLIC
TEL	(420) 224-907-500
FAX	(420) 224-907-503
HOME	www.czechtrade.cz
E-mail	info@czechtrade.cz
성격	체코 산업무역부 산하 기관인 국영 무역 진흥 기관

3) 비상 연락처

경찰	614-414-476 (영어 소통 가능한 radio police) 또는 158(경찰)
자동차 고장 신고	1234
카드 분실 신고	Visa, Diner's : 224-125-353 Master : 222-412-230 Amex : 224-219-992
자동차 열쇠를 두고 잠근 경우	224-016-616
수도 고장시	267-310-543
전기 고장시	224-915-151
전화 고장시	13129
화재 시:	150
교통 사고	261-214-141

타. 관광명소

1) 관광 정보

프라하는 대중 교통편이 편리하며 대부분의 시내 관광지가 밀집되어 있어 걸어서 관광할 수 있다. 구시가 광장과 바츨라프 광장에서 출발하는 Tour회사들의 안내를 받아 시내 관광을 할 경우 짧은 시간에 유용한 관광을 즐길 수 있다. 프라하 시에는 약 160개의 화랑과 50여 개의 박물관이 있으며 무엇이 전시되고 있는가는 프라하 정보서비스(Prague Information Service, www.prague-info.cz)를 통하여 안내서를 구할 수 있으며, 영자 신문 The Prague Post 등을 통해서도 행사와 전시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2) 시내의 관광 명소

프라하 시내 관광 명소는 구시가 광장, 바츨라프 광장, 찰스 다리 그리고 프라하 성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들 관광 명소들은 각각 도보로 5-10분 거리에 위치하며 프라하 성에서 출발하여 찰스 다리, 구시가 광장 그리고 바츨라프 광장 방향으로 돌아보는 것이 피로를 더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각 장소 별 관광 명소들은 다음과 같다.

□ 프라하성(PRAHA CASTLE)

○ 프라하 성 연혁
- 9세기 후반 현재의 프라하 성 자리에 작은 성들이 건축되었으며, 1303년 화재로 작은 성들이 소실되었으나 1333년 찰스 4세(즉위 전)의 지시로 프라하 성이 축성되었다.
-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으로부터 체코슬로바키아가 독립한 이후 대통령실이 프라하 성에 들어가게 되었다.

○ 비투스 성당(ST. VITHUS CATHEDRAL)
- 10세기경부터 원형 건물이 있었으나 1344년 찰스 4세 때 성당 건설이 시작되었다. 1873 - 1929년간 건설된 성당 서쪽 부분(신고딕 양식)이 완성됨에 따라 현재의 모습(길이 124M, 최대폭 60M, 최고 높이 100M정도 규모)으로 완공되었다. 성당 지하에는 찰스 4세를 비롯한 수명의 체코 왕 무덤이 있다.

○ 황금 소로(GOLDEN LANE)
- 황금 세공사와 연금술사들이 거주한 지역으로 이 거리를 따라 16개의 작은 집들이 죽 늘어서 있으며 비투스 성당 내에서 빼놓을 수 없는 관광 명소 중 하나이다.

○ 카프카의 집(황금소로 22번지)
- 카프카는 1916.11-1917.5월 간 이 집에서 매일 늦게까지 집필 활동을 하고 밤이 되면 구시가 랑게 거리 18번지에 있는 자기 하숙집으로 돌아갔고 한다. 그는 이 기간 중 많은 단편작품을 완성하였으며 특히 프라하 성을 모티브로 한 "성"이라는 작품은 매우 유명하다.

□ 찰스 다리

1342년의 대 홍수로 현재의 다리 자리에 있던 목조 다리(935년 건설) 및 석조 다리 (JUDITH 다리, 1170년 건설)가 모두 유실된 이후 1357년 찰스 4세의 명령에 의해 당시 27세인 독일 궁정 건축가인 피터 팔러(프라하성과 비투스 성당도 건축)에 의해 착공되어 1402년에 완성되었으며 중부 유럽에서 레겐스부르크(Regensburg) 다리 다음으로 오래된 다리이다.

피터 팔러는 구시가지와 프라하성을 연결하는 교통로 역할뿐 아니라 군사적으로 방어적 역할 수행도 고려하여 다리를 건설하였으며 실제로 1648년 스웨덴 군대가 프라하 성을 공격하려다가 구시가 방향 다리 끝에 있는 탑의 방어에 막혀 실패한 바 있다(30년 전쟁의 마지막 격전지). 이 다리는 1870년 '찰스 다리'로 명명되었으며 그 후 수차에 걸쳐 수리되었다. 가장 최근으로는 1974년에 대폭적인 수리가 있었다. 1950년 차량 통행이 금지된 이후에는 좋은 산책로가 되고 있으며 겨울을 제외하고는 각종 기념품과 그림을 파는 사람과 악사들, 그리고 관광객들로 밤 늦게까지 붐비는 등 파리의 몽마르트 언덕을 연상케 한다. 찰스 다리는 프라하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이며, 로마 콜로 세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파리 에펠탑처럼 프라하 시민 가슴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다.

○ 구시가(STARE MESTO) 방향 탑

- 구시가쪽에서 찰스 다리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진 고딕 양식의 탑으로 유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다리 탑 중의 하나로 1648년 스웨덴군의 공격을 격퇴한 것을 기념하는 조각품(1950년)이 탑 벽면에 있다.
- 블타바강 방향 쪽에는 1층 중앙에 세인트 비투스, 오른쪽에 찰스 4세, 왼쪽에 찰스 4세의 아들인 바츨라프 4세의 조각상이 있으며 2층에는 보헤미아의 두 성자인 아달버트와 프로코피우스의 조각상이 있다.
- 과거에는 채무자를 위한 감옥으로 사용된 적도 있고 가끔 일반인들에게 공개되기도 하며 138계단을 통해 탑 위에 올라가서 보면 구시가, 찰스 다리, 프라하 성들이 어우러진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 찰스 다리의 성자상
- 찰스 다리의 양편에 있는 각 15개씩 줄지어 서 있는 고딕 및 바로크 양식의 30개 성자상은 1683년부터 1938년간 약 250년에 걸쳐 프라하의 최고 조각가들에 의해 제작되었다. (그 중 26개는 1706-1714년 사이에 제작)
- 찰스 다리에 상설 야외 조각 미술관을 개최하려는 아이디어는 로마의 천사 다리(Angel Bridge)에서 따온 것으로 현재 일부 조각은 모조품이며 다른 진품 작품도 점차 모조품으로 대체되고 진품은 프라하 시 미술관으로 이전되고 있다.

○ 블따바강
- 독일 명 "몰다우"강으로 프라하 시를 S자 형태로 남북으로 관통하고 있으며 체코가 자랑하는 작곡가 스메타나(SMETANA)의 교향곡 "나의 조국(MA VLAST)"에 등장. 7개의 다리가 강 위에 가로놓여 있고 그 중 찰스 다리가 가장 아름답고 오래 되었으며 가장 유명하다.

□ **구시가 광장**

○ 천문 시계
- 천문 시계의 바깥 원은 청색, 흑색, 그 사이사이에 갈색으로 4개 부분으로 나뉘어져 각각 낮, 밤, 새벽, 저녁을 나타내며 천문 시계 안쪽 원은 태양, 달, 북극을 상징한다. 천문 시계 밑의 원형은 12달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장자리를 따라 매일을 상징하는 성자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 매시 정각 시계 옆 해골 인형이 움직이면서 땡땡 종을 치면 동시에 그 위 두 개의 창문이 열리고 그리스도 12제자 인형이 돌아가면서 나타난다.

○ 틴교회(GOTHIC CHURCH OF LADY BEFORE TYN)
- 구시가 광장 맞은편 동쪽에 우뚝 솟은 고딕식 쌍둥이 탑으로 1365년에 착공되어 15세기 후반 현재와 같이 80m 높이의 쌍둥이 탑으로 완공되었다.

○ 성 니콜라스 교회
- 구시가 광장 잔디밭 옆의 바로크 양식의 교회로 1732-35년간 건축가 데젠호프가에 의해 건립되었다.

□ **바츨라프 광장**

○ 광장의 동쪽 끝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에서 출발하여 "나 프리코페" 거리(서울의 명동과 같은 번화가)까지의 길이 750m, 폭 60m의 대로로 광장이라기보다는 파리의 샹젤리제처럼 불르바드에 가깝다. 이 광장은 20세기 초까지 우시장으로 사용되었다.

○ 1918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몰락으로 바츨라프 가마상 밑에서 체코 슬로바키아 공화국 출범이 선포되었고, 1948년에는 공산당의 권력 장악으로 사회주의공화국이 선포되었으며, 1968년 "프라하의 봄"이 소련의 무차별 진압으로 인해 실패로 끝났을 때 체코 국민들은 이 광장을 중심으로 저항하였으며, 1989년 민주화 혁명(벨벳 혁명)의 중심지가 되는 등 체코 근대 역사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 성 바츨라프 기마상
- 10세기경 국난이 닥쳐왔을 때 중부 보헤미아의 그라니크 동굴에서 깊은 잠에 빠진 기사들을 이끌고 적을 물리쳤다는 전설의 주인공인 바츨라프(체코 민족의 수호 성인)를 기념하여 1912- 1913년에 성 바츨라프 기마상이 국립박물관 앞에 건립되었다. 이 기마상 앞뒤에 있는 4명의 호위 성인은 1920년대에 추가된 것이다. 동상 앞에는 1968년 "프라하의 봄" 당시 소련군에 저항하다가 희생된 사람(특히 21세의 나이로 분신 자살한 찰스대 학생 Palach)들에게 헌화되거나 1989년 혁명을 기념하여 증정된 꽃, 촛불, 사진들이 놓여 있다.

○ 국립 박물관
- 바츨라프 광장의 동쪽 끝에 위치해 있으며 1885-90년에 건축된 폭 100m 높이 70m의 신 르네상스양식의 건물이며 광물 및 동.식물 표본 등을 전시한 자연 박물관으로 박물관 천정과 1층 방에는 체코 역대 유명 인사의 초상화와 청동 흉상이 전시되어 있다

3) 쇼핑

□ 주요 쇼핑장소

명품 상점들은 구 시가 광장과 유태인 지구 사이의 Parizska거리에 집중되어 있으며, 보헤미안 크리스털 등 특산품 상점은 구시가광장 주변과 바츨라프 광장 주변에 많이 있다.

□ 특산품

체코의 특산품로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고 있는 보헤미안 크리스털이 있으며, 또한 석류석(Garnet)도 유명하다. 약초로 빚어서 위장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전통주 'Becherovka'도 관광객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